

Ⅲ

일 본

[애완동물]	239
[관상조류]	272
[관상어]	283
[곤충류]	302

[애완동물]

1_ 시장규모 및 산업동향

가. 시장규모

- 일본의 애완동물 산업시장은 최근 1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일본 국내에서도 큰 규모의 산업으로 인식됨. 최근 시장규모는 애완동물식품 약 4,000억 엔, 애완동물 의료비 3000억 엔, 애완동물용품 약 2,000억 엔, 기타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약 1,000억 엔, 총 1조 엔의 규모로 추정됨
- 산업규모의 확대, 성숙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애완견, 고양이의 사육수는 2007년도 2,552만 마리(PetFood공업회 조사) 그 중 애완견의 수는 약 1,252만 마리(실내외 사육 합계)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함
- 일본의 총 세대 수 약 5,000만 세대의 3분의 1세대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형 견 사육의 경우 약 300~400만 엔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애완동물 사육수, 사육율〉

(단위 : 만 마리)

	개		고양이	
	사육 수	사육율	사육 수	사육율
2005년	1,307	19.4%	1,210	14.9%
2006년	1,209	19.2%	1,246	14.7%
2007년	1,252	18.9%	1,300	14.4%
2008년	1,310	18.2%	1,374	14.4%
2009년	1,300	18.1%	1,385	14.4%

자료원: PET FOOD협회 조사~2008년 / JPR 독자추정 2009년

-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관심도는 매년 높아지면서 단지, 애완이나 감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 공생 파트너로 인식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행동 또한 왕성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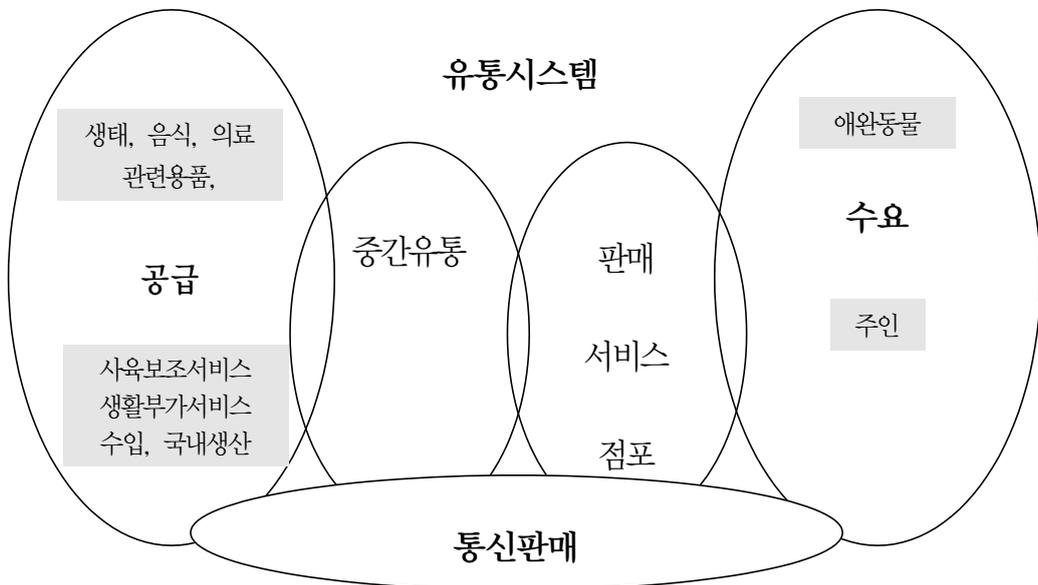
〈개, 고양이 사육 세대 수〉

(단위 : 만 세대)

	개	고양이	합계
2005년	960	738	1,698
2006년	969	734	1,703
2007년	952	725	1,677
2008년	930	730	1,660
2009년	920	735	1,665

주) 애완동물 사육율에서 전국 세대 수를 반영한 추이

〈애완동물 산업 / 시장의 구조〉



〈애완동물 산업, 시장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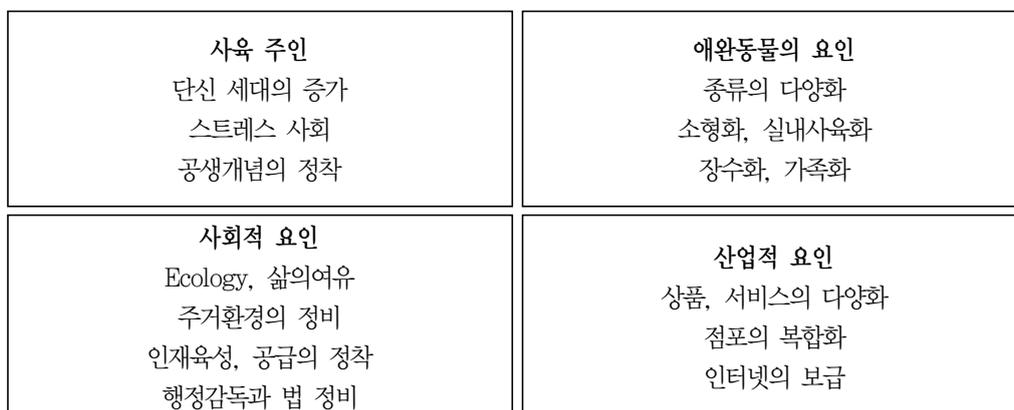
(단위 : 억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애완동물 생체	1,075	1,045	1,010	960
의료	2,892	3,066	3,311	3,377
식품	4,059	4,451	4,585	4,493
용품	1,700	1,763	1,834	1,779
관련서비스	2,004	2,156	2,328	2,491
합계	11,730	12,481	13,068	13,100

자료원: 산업경제신문 / 미디쿠스社 발표수치~2007년

JPR社 독자추정 2008년~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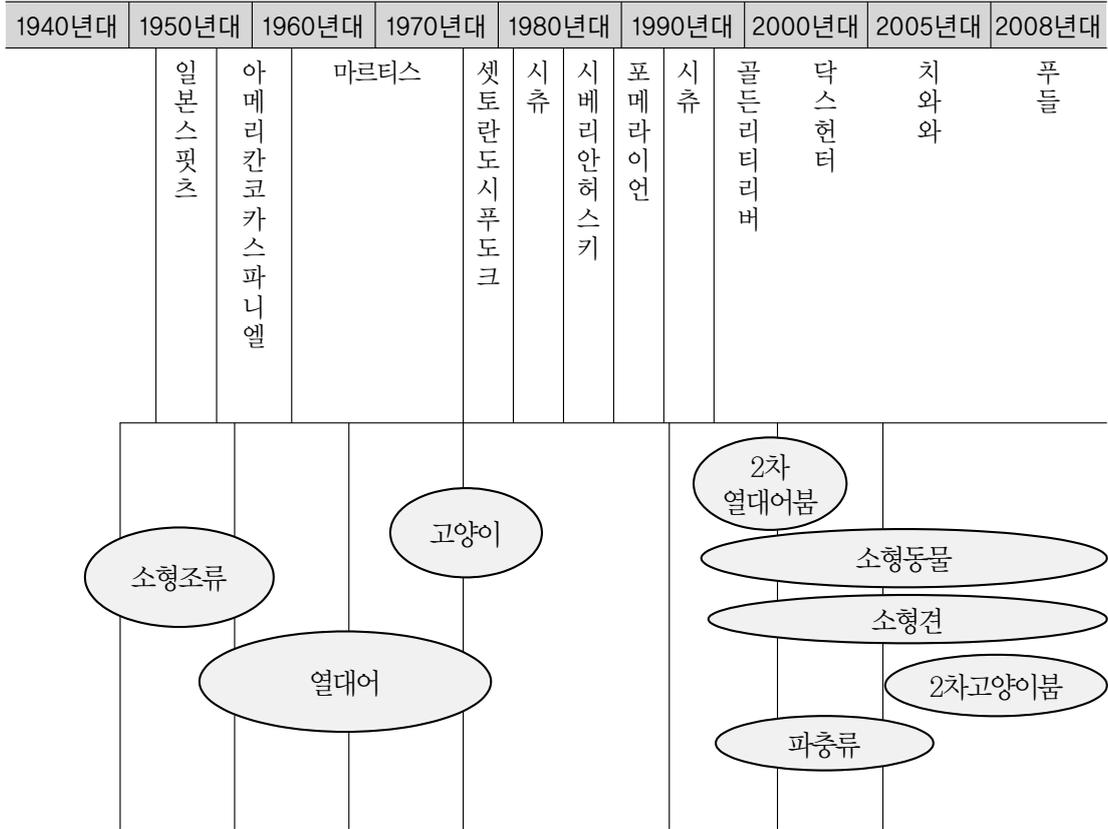
- 애완동물 사육 수 증가의 둔화, 판매가격의 저하.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동물애호관리법의 영향으로 판매규제가 엄격해짐. 2008년도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생체판매업 감소. 의료분야는 동물병원의 신규개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변함없이 증가추세를 보임
- 애완동물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 식, 약용잡화 등의 매상이 늘어남. 앞으로 애완동물 동승 대응 자동차 등이 추가되면 2조억 엔까지 성장될 것으로 보여짐



사육수의 증가, 소비의 증가, 매상증가, 질과 moral의 향상

나. 애완동물 사육현황

〈일본의 인기 애완동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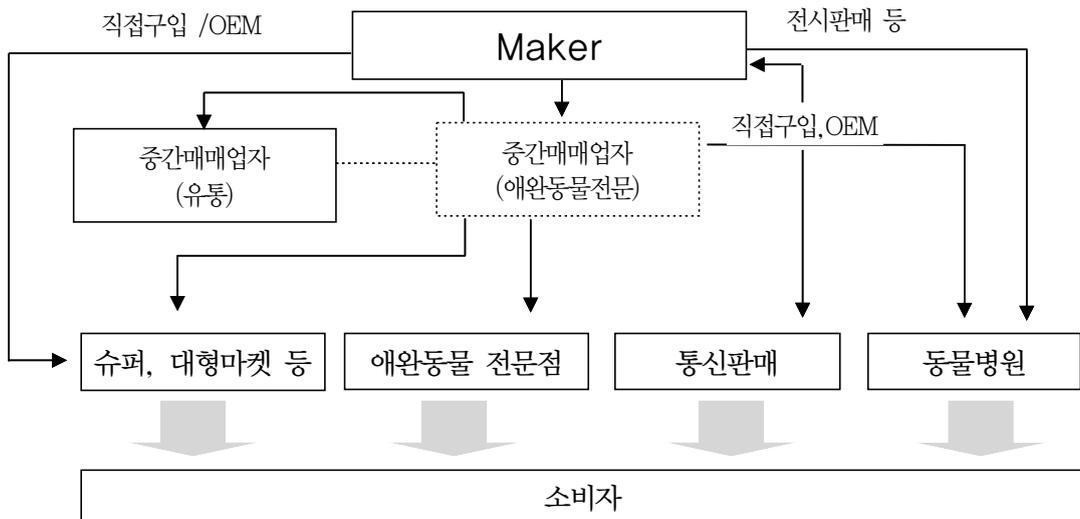


〈애완동물산업 시장개론 2010 주식회사 JPR〉

2_ 유통형태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애완견 숍 또는 슈퍼, 드럭 스토어,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특히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애완견 코너가 전체판매량의 10%를 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음

가. 애완견 산업 시장의 유통 경로



나. 동경도 유통과정

- 전국 애완동물 관련 기업(업자)수 약 26,081업체, 동경도내 관련기업(업자)수 약 3,254업체로 전국의 12.5%를 차지함
- 2006년도에 비해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번식 등에 관련된 모든 종목에서 증가율을 보임. 동경도내에서는 12.7%의 증가율을 보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도매업은 23%, 제조업 16.3%로 그 뒤를 이었음. 소매업의 경우 폐업점포도 많으며, 그에 따른 신규점포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애완동물 관련 기업 수 추이(동경도)〉

	기업	소매	도매	서비스	양식, 번식	제조
2007년	3,254	1,385	308	2,098	99	299
2006년	2,888	1,266	250	1,834	92	257
2003년	2,828	1,322	353	1,614	87	269
2001년	2,593	1,201	327	1,455	74	267
2000년	2,537	1,175	251	1,431	75	266
1998년	2,326	1,168	251	1,200	76	283
1996년	2,242	1,157	267	1,115	80	322

자료원: 제1회 동경도 애완동물 산업동태 조사(2007년 10월)

〈판매 분야 특성 분석〉

	유통계 대형마트, drugstore	애완용품전문점	통신판매	동물병원
매상 규모 / 추이	大 / 감소 경향 소모품의 대량 구입 수요 축소	中 / 확대 경향 전문지식과 상품의 필요의식증가	小 / 확대경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판매, 묶음 상품의 대량구입 확대	小 / 유지 수의사가 권유하는 동물병원 한정상품 인기
주력 상품	애완용 깔개, 식품 사쿠루, 케이지 등의 대형상품	소모품 그 외 프리미엄식품, 파레루 완구 등 전문상재	생활잡화, 실비늘용품, 주거용품, 사프리멘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병원전문식품 사프리멘토 그 외의 의료기능부가용품 등
고객층	익애형~방사형 모든 주인들이 고객대상	익애형 / 공생형 / 종자형(從者) 애완견 사육 미숙자, 사육예정자 등 고객 대상		익애형 / 공생형 치료목적 그밖의 바느질교실, 사육 상담
참고	병원 병설형, 대형마트 애완동물 전문점 병설 증가 추세	체인점 추세 개인가게도 많음	대형마트, 전문점과 상품 차별화를 위한 자사(自社) 상품개발에 주력	매장면적의 확대는 어렵고 애완용품점을 병설하는 경우 있음

애완용 시트(갈개)



일본 PET FOOD차미칩



일본 PET FOOD 카랏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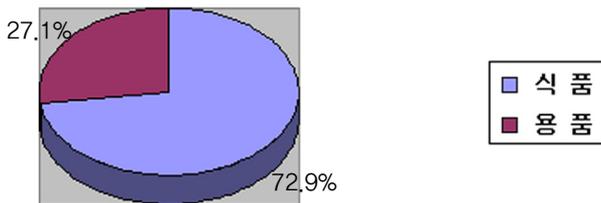


3_ 생산동향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

- 10개 회사 대상 조사 실시
자페루, 에코토레딘그, 라브Pet상사, 토쇼, 마크상업, 아라타(잡화계 도매), 일본웨인, 미사토상업(애완동물 전문 딜러 7社), 미츠이 식품(식품계 도매), 미츠이(종합상사)
- 10개 도매업자가 선택한 유망 분야
 - ▶ 전문점 : 애완동물용품점 3회사, 병설 4회사
(전문점 통합 등이 늘어나고, 비교적 대규모 점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 통신 : 4회사
(다양한 필요에 대응, 풍부한 제품)
 - ▶ 슈퍼마켓 : 3회사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교외로 물건을 사러 나가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늘어남)
 - ▶ 대형마트 : 2회사
(다양한 필요에 대응, 넓은 매장)
 - ▶ Drugstore : 1회사
(교외형 대규모 매장이 늘어남)

<매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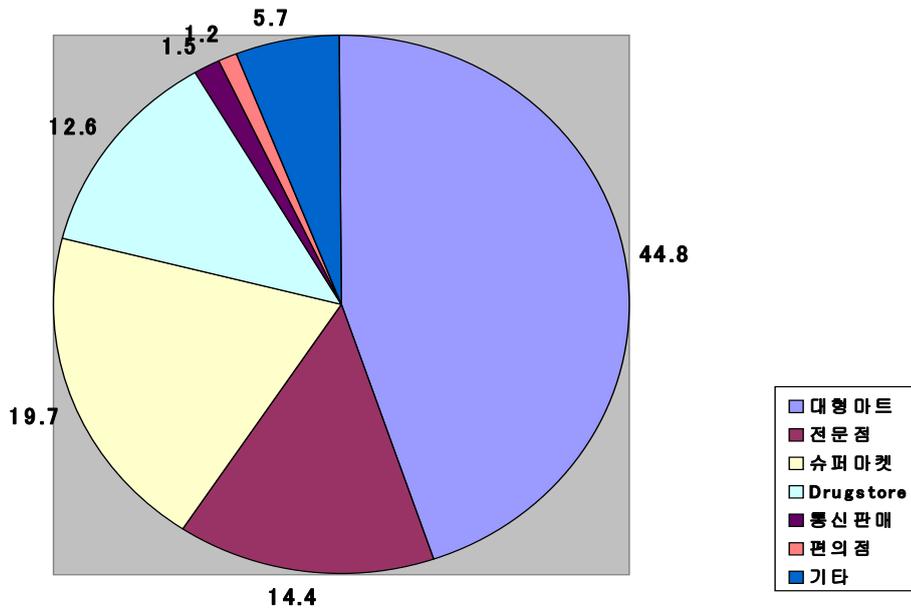
(2008년도 실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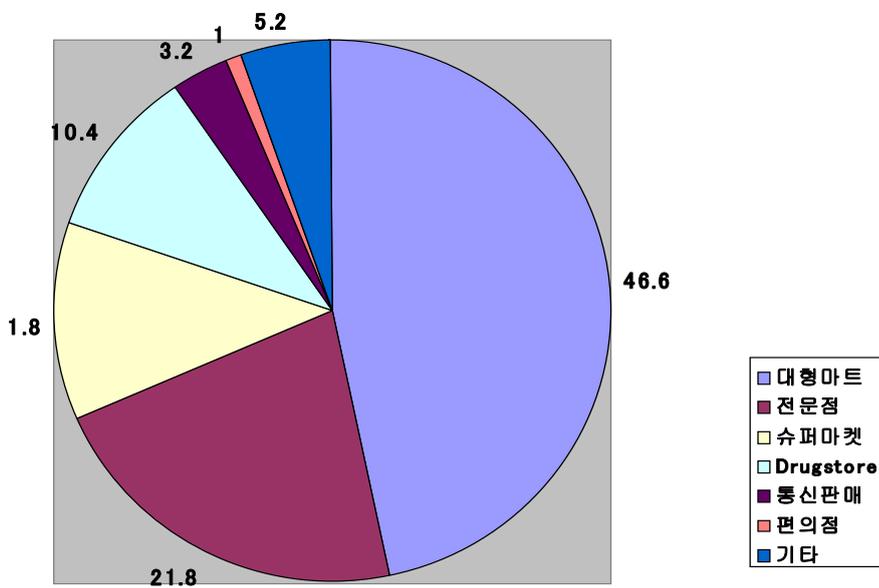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식품은 저가격지향, 용품은 사재기 경향이 늘어남. 당분간 식품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

〈애완동물 식품 산업 실태 조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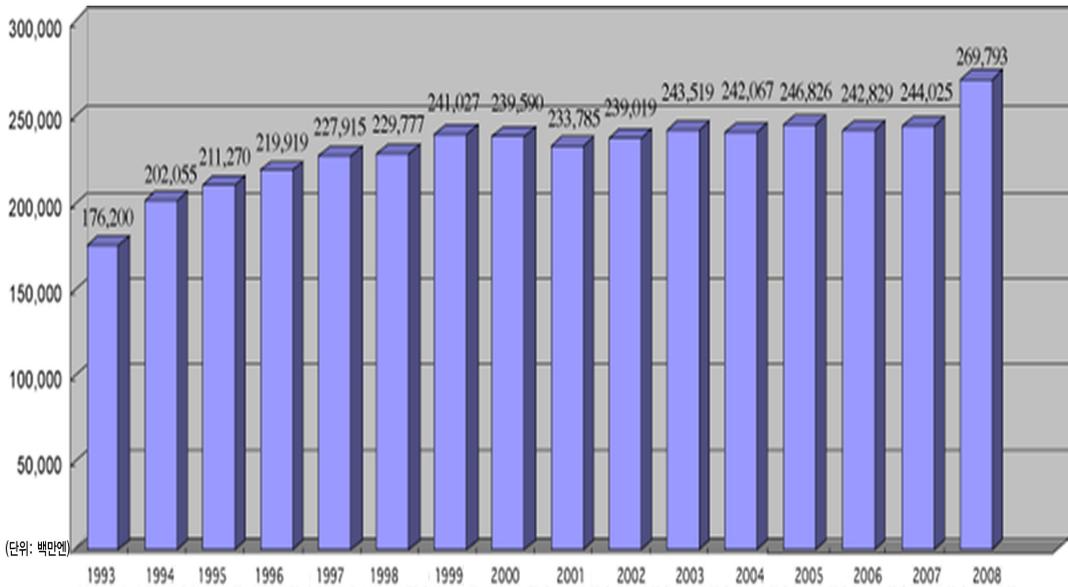
〈식품 분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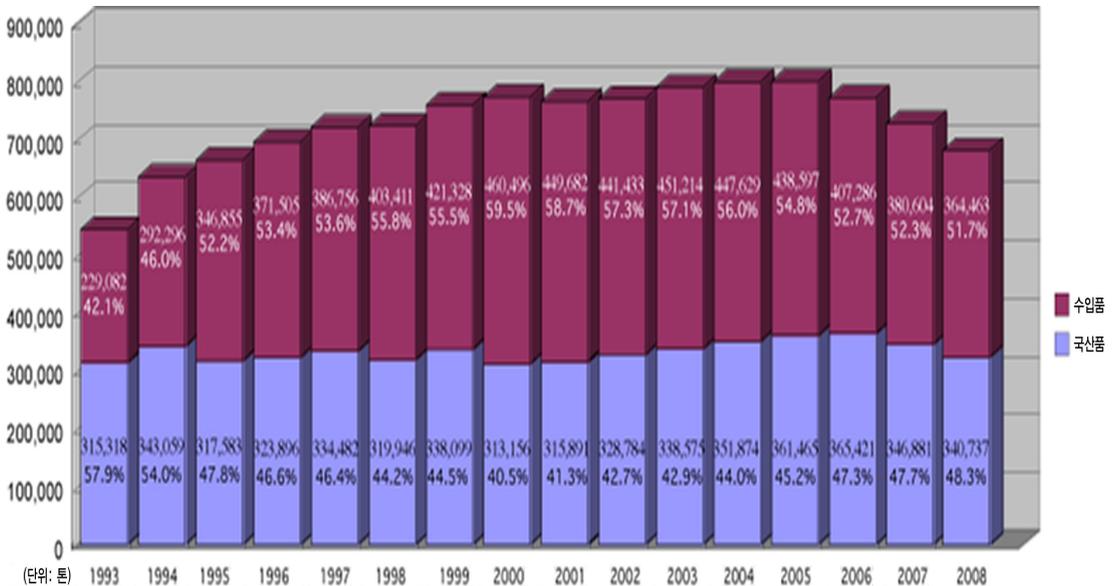
〈용품분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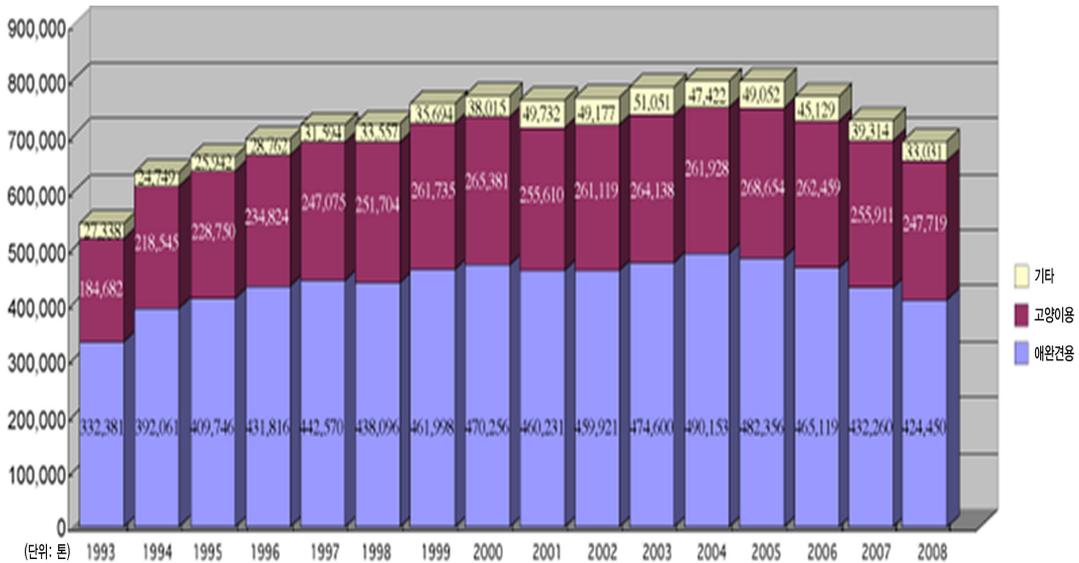
〈시장규모(유통량 / 전체부문)〉



〈시장규모(수입上, 국산下 유통량)〉



〈시장규모 (용도별 유통량 기타上, 고양이中, 개下)〉



〈농림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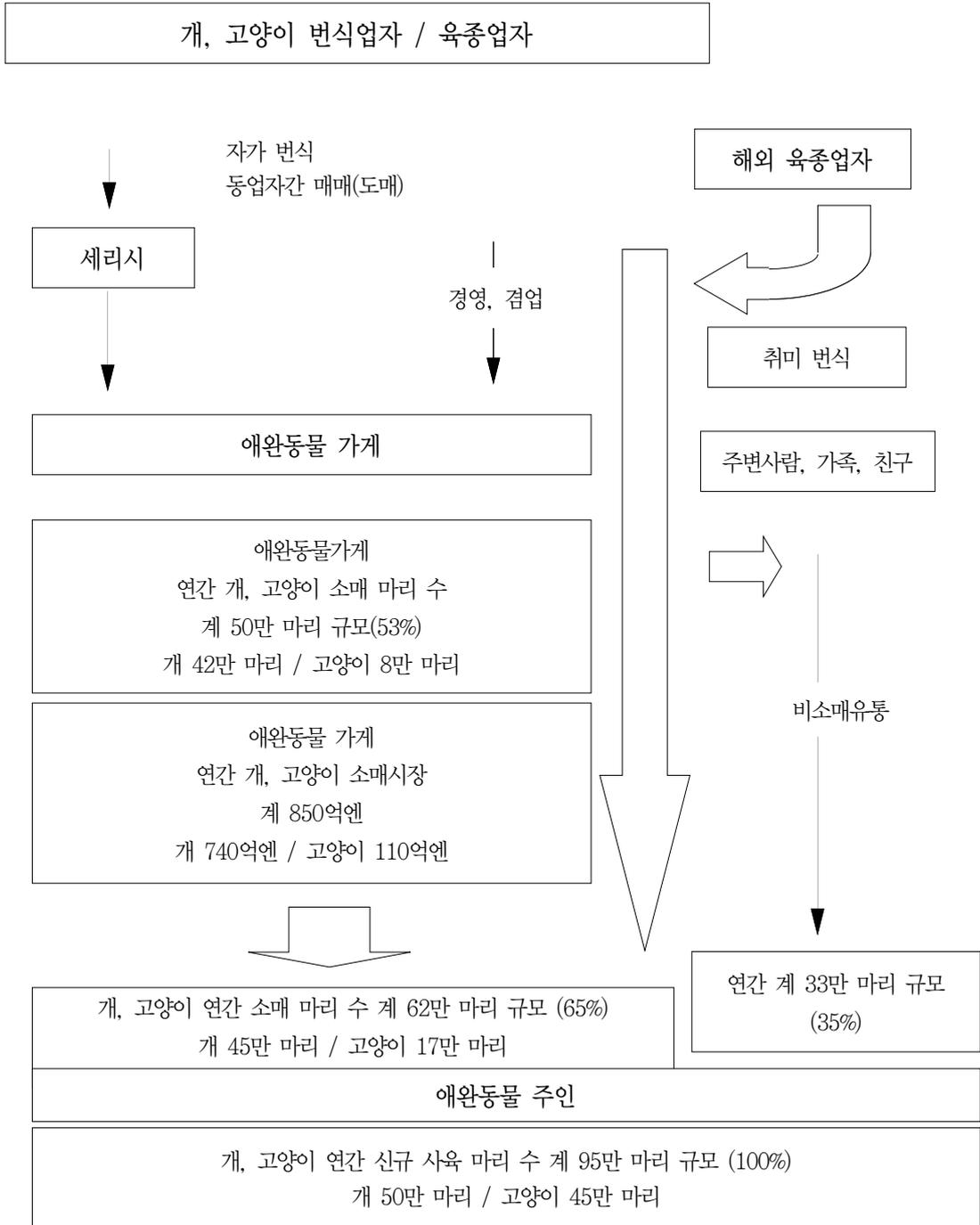
가. 개, 고양이 생체유통구조

개, 고양이 신규 사육수 95만 마리(애완동물 산업 시장개론 2010)

개, 고양이의 구입 경로 애완동물숍 50% 이상, (중간매매업자) 직접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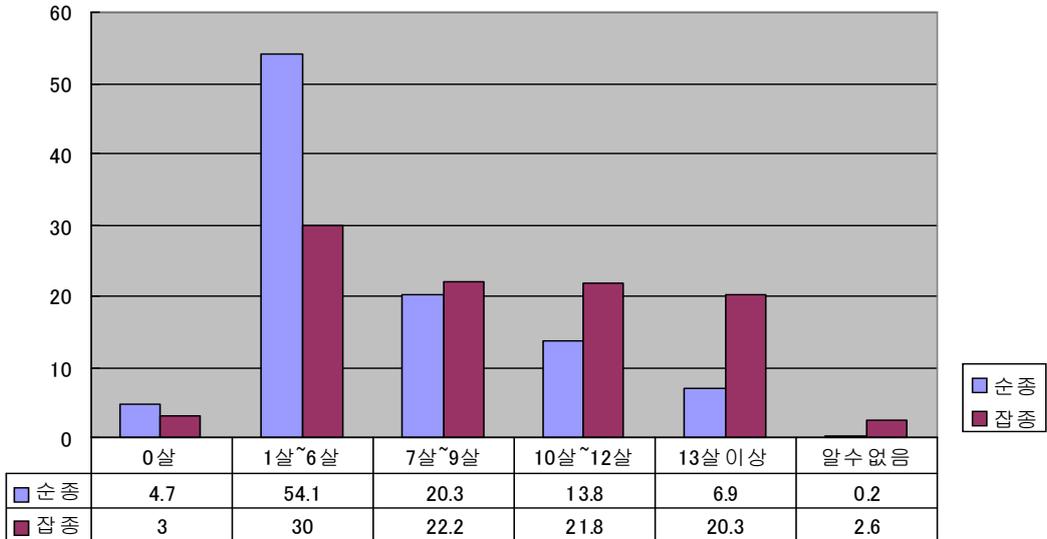
주변 사람을 통해 구입 순으로 나타남

특히, 고양이의 경우 비 소매유통(주변 사람)을 통해 구입, 받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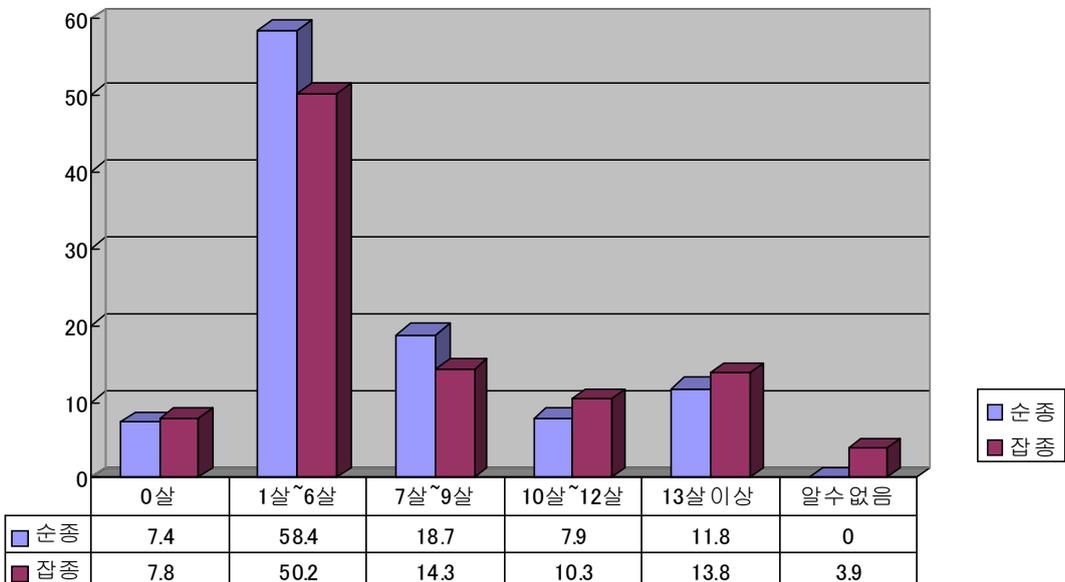


나. 순종, 잡종 애완동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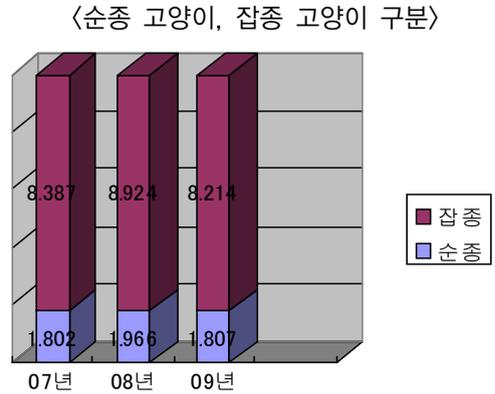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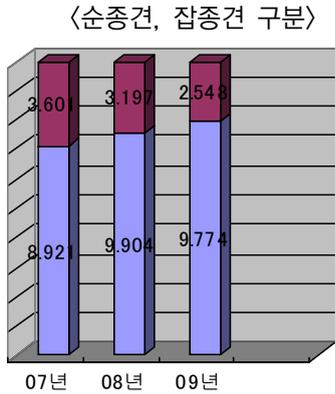
〈순종견, 잡종견에 따른 애완견 나이별 구분〉



〈순종 고양이, 잡종 고양이의 나이별 구분〉



〈제16회 전국 개, 고양이 사육을 조사〉



다. 구매 및 소비 특성

가) 애완견

- 2008년도 JKC(일본캐넬클럽)에 등록된 애완견 수(465,540마리) 위 조사 결과와 같이 소형견 점유율이 반 이상됨

(단위 : 만 마리)

1	<p>푸들 (Toy 85,641 · Medium 9 · Miniature 90 · Standard 1,173)</p> 	86,913
2	<p>치와와</p> 	82,589

<p>3</p>	<p>닥스헌더 (Miniature 73,656 · 카닌헨 5,362 · Standard 138)</p> 	<p>79,156</p>
<p>4</p>	<p>포메라이언</p> 	<p>20,407</p>
<p>5</p>	<p>요쿠사테리아</p> 	<p>20,349</p>
<p>6</p>	<p>빠빠용</p> 	<p>14,1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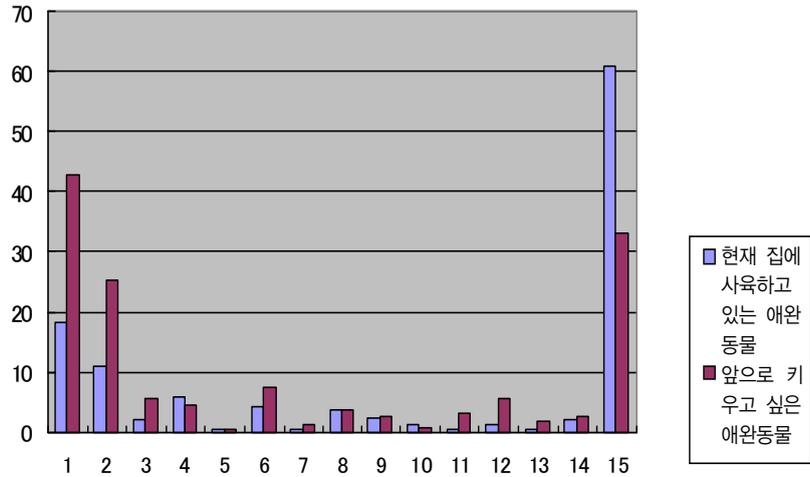
7	시츄	13,549
8	프랑스 불독	12,563
9	시바이누(일본특산 소형개)	12,228
10	미니어처 슈나우저	11,645
11	마르티스	10,720
12	웨르슈 코기 펜부룩쿠	9,602
13	퍼그	9,472
14	미니어처 핀셔	7,176
15	라브라도르 레토리버	6,917
16	카바리어킹그 찰스스파니엘	6,738
17	골든 래토리버	6,544
18	쟈크 랫세르 테리아	5,764
19	비그르	4,496
20	보타 코리	4,390
21	펜키니스	3,984
22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3,970
23	보스턴 테리아	3,643
24	셋도란도 시프도그	3,409
25	이탈리안 그레하운도	3,150
26	불독	2,053
27	바니즈 마운틴 도그	1,593
28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아	1,569
29	칭(일본 소형견)	1,286
30	일본스핏츠	955

사단법인 재팬 케네르 클럽 2008년도 등록 애완동물 (개)마리 수 조사 결과

라. 소비자 인식

현재 키우는 애완동물의 종류, 앞으로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의 종류

(대상 : 전 세대 / 단위 : %)



	1 개	2 고양이	3 조류	4 금붕어	5 비단잉어	6 열대어	7 해수어	8 송사리	9 거북이	10 기타물	11 곤충	12 토끼	13 모름/모름	14 기타	15 없다
■ 현재 집에 사육하고 있는 애완동물	18	11	1.9	6	0.5	4.3	0.3	3.8	2.5	1.3	0.3	1.3	0.2	2.1	61
■ 앞으로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	43	25	5.5	4.6	0.5	7.6	1.4	3.7	2.8	0.7	3	5.4	1.6	2.7	33

3_ PET FOOD 수입국가별 수량

(단위 : 톤)

수입국가	년도	개	고양이	수입국가	년도	개	고양이
미국	2006	93,985	53,265	뉴질랜드	2006	8,297	0
	2007	65,555	57,410		2007	6,089	0
오스트레일리아	2006	84,543	25,569	한국	2006	174	3,907
	2007	77,463	17,501		2007	328	2,388
타이	2006	3,731	86,191	인도네시아	2006	0	1,842
	2007	5,167	84,269		2007	0	1,699
네덜란드	2006	0	30	덴마크	2006	658	515
	2007	23,144	576		2007	647	133
중국	2006	17,032	370	오스트리아	2006	1,136	280
	2007	17,808	365		2007	436	82
프랑스	2006	8,032	370	기타	2006	594	57
	2007	6,931	2,627		2007	431	4
캐나다	2006	4,393	2,518	합계	2006	222,579	179,581
	2007	4,554	2,680		2007	208,554	169,734

자료: PET FOOD 협회 「PET FOOD산업 실태 조사」

4_ 각 분야 관리, 규제법규 상황

- 각 분야의 관리, 법규는 애완동물 수입에 관한 분야, 그리고 동물애호관리법에 규정된 동물 취급업, 애완동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동물 의료분야 4영역에 정해져 있음. 그 외 분야에서 애완동물 관련 규제법규는 존재하지 않음
- 2008년 통상국회에서 성립된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 PET FOOD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시행된 법률임

<각 분야의 관리, 규제법규>

애완동물 수입	동식물검역법,(농림수산성), 동물애호관리법, 종자 보존법(환경청) 특정동물사육관리규정법(환경청), 특정외래생물법(환경청)
애완동물 번식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 등록(환경청)
중간매매, 도매	동물애호관리법, 동물 취급업자등록(환경청)
판매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등록(환경청)
보관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등록(환경청)
빌림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등록(환경청)
훈련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등록(환경청)
전시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취급업자등록(환경청)
의료	수의사법, 수의료법(농림수산성)
약	약사법(농림수산성)
의약부외품	약사법(농림수산성)
광견병예방접종	광견병예방법(후생노동성)
개 감찰, 등록	광견병예방법(후생노동성)
애완동물 등록	동물애호관리법, 마이크로칩 부착규정(환경청)
식품	애완동물식품안전법(농림수산성, 환경청), 약사법(농림수산성)
사프리멘토	애완동물식품안전법(농림수산성, 환경청), 약사법(농림수산성)
용품	규제없음, 일반공업제품과 같음
이용, 미용	규제, 면허, 영업 허인가 없음
장례	규제, 면허, 영업 허인가 없음
보험	보험업법(금융청)

가. 정부의 정책

■ 애완동물 수입 규제

- 애완동물 수입에 대해서는 동식물검역법에 의해, 관세영역 안에서의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국내 자연동물, 축산동물 또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역병감염의 방지 설치와 불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됨
- 현재, 인간에게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동물을 수입, 판매, 보관, 사육하는 경우 동물 애호관리법에 따라 소재지, 각 지역의 도지사에게 신청, 허가가 필요
- 또한, 워싱턴 조약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포획, 매매가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물은 국내(일본)에서도 종의 보존법에 따라 수입, 매매, 사육을 금지함(멸종위기에 처한 국내 자연동물도 동법 처리)
- 해외 기원의 외래생물에서 생태계, 인간 신체, 생명, 농림수산업에 대해 유해,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특정외래생물법에 엄격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어, 과학연구 등의 학구적 목적 등의 수입, 운반, 보관, 사육 금지. 허가는 목적별 주무장관에 신청, 허가 취득 필요

나. 관련법령

지정지역 이외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개 등의 수입에 관한 지침서

(최종갱신 2010년 4월)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대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에 한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제도, 하와이, 괌을 제외한 모든 지역 대상

(2005년 6월 7일 현재)

일본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여우·미국너구리·스핑크스 이하 개 등은 광견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조건을 갖춰 일본에 도착한 개나 고양이의 계류기간은 12시간 이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개나 고양이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필요한 기간[180일이내]의 계류 검사를 받게 됨. 여우 미국너구리·스컹크는 사전조치나 증명서 유무에 관계없이, 180일간 계류 검사 실시. 개 등은 검사결과에 따라 반송 또는 처분될 수 있음

<이 지침서는 위에 적힌 대상지역에서 수입되는 개 등에 대해 필요한 사전조치와 상세한 절차, 일본도착 때의 수입검역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음>

개, 고양이, 여우, 스컹크, 미국너구리·대상이 되는 동물종의 상세한 것은 p264 참조
수출국 정부기관증명서·이 지침서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일본의 추천양식(Form A, Form C)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Form A와 Form C는 동물검역소(<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가능

(별지) : 2010년 4월 15일부터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본에 도착한 개 또는 고양이의 계류기간이 12시간 이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1 을 모두 갖춰야 함. 1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도착 7개월 이상 전부터 준비 시작. 1 을 갖추지 아니한 개 또는 고양이는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서 필요한 기간 180일 이내의 계류검사를 받게 됨

여우·미국너구리·스컹크(skunk)는 도착 전의 조치나 증명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180일 간의 계류 검사 실시. 광견병을 발증하고 있는 동물의 도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또 계류 기간 동안 적절한 개체관리와 병이나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 칩 장착

(1(1)참조)과 출국전의 임상검사 (1(7)참조) 및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증명서를 취득(1(8)참조). 또한 개 등은 검사의 결과 반송이나 처분될 가능성 있음

1) 수입전 준비

다음 순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1) (2) (3) 및 (7)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1(8)참조). 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하, 수입자)은 미리 일본의 추천 증명양식 (Form A, Form C)을 입수하고 조치를 한 수의사에게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해 마지막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최종확인을 받는 방법을 권함. 증명서의 추천양식은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할 수 있음

(1) 마이크로칩 장착

국제표준화기구(ISO) 11784과 11785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을 개 등에 장착. 장착 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따르고, 장착 후에는 확실하게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또 광견병예방 주사,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치수 검사를 위한 채혈, 출국전 임상검사시에는 반드시 판독기로 마이크로칩 번호를 읽어들이어 개체 확인. 이미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이나 장착한 마이크로칩이 ISO11784과 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여 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또한 일부 ISO 규격 이외의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에 있어서 판독 가능한 경우도 있음. 사전에 도착 예정항(공항·항구)의 동물검역소에 문의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1(8)참조). 일본 도착 시 수입검사에서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마이크로칩 번호가 수출국 정부기관 의 증명서와 대조할 수 없는 동물은, 180일간의 계류 검사 실시. 마이크로칩 번호를 포함,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와 대조를 할 수 없는 개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가 없는 것으로서 반송됨

(2) 광견병예방 주사(개 또는 고양이)

주사 시기: 마이크로칩 장착후

마이크로칩 장착후 광견병예방 주사(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갖춘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만을 인정함)를 2회 이상 접종.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 이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 및 생백신은 현재 조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접종 필요

또한, 마이크로칩 장착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 광견병 예방주사가 유효해서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의 안내를 읽거나 동물검역소에 상담

예방 주사를 맞은 개 또는 고양이는 생후 91일째 이상(태어난 일을 0일째로 함)이어야 함. 또 2회째 이후의 예방주사는 1회째 접종일로부터 30일 이상(접종일을 0일로 함) 지났고 1회째 예방주사의 유효면역 기간 이내이어야 함. 아울러 일본 도착일까지로 유효면역기간이 지날 경우는 반드시 예방주사 추가 접종 필요

(3)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개 또는 고양이)

채혈 시기: 마이크로칩 삽입 후에 2회 이상 광견병 예방주사(방법은 (2)항)를 접종한 후(2회째 접종일도 포함) 마지막으로 접종한 예방주사의 유효면역 기간내 일본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지정된 검사시설(이하 지정 검사시설)에 혈액을 보내 광견병의 항체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항체수치 0.5IU/ml(혈청 1ml 당 0.5 국제단위)이상이어야 함. 이 검사 결과는 채혈일부턴 2년간 유효로 간주됨. 2년 이내에 일본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무효가 되므로 요주의

채혈일, 지정 검사시설, 검사 결과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또 지정 검사시설의 결과 통지서는 일본 도착시에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에 첨부해서 동물검역소에 제출(1(8)참조)

혈액 채취 및 지정 검사시설에 송부는 미리 지정 검사시설에 연락을 취해 검사 신청서와 혈액이 든 용기의 표시방법, 혈청분리 필요의 유무, 수송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실시.

혈액의 채취에 대해서는 판독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혈액은 흘러나오지 않도록 된 용기에 넣어 밀봉. 송부 혈액에는 지정 검사시설이 정하는 검사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혈액 채취를 행한 수의사가 서명한 것을 동봉

지정 검사 시설은 갱신(신규지정 또는 지정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 확인

(4) 항체보유후의 수출전 대기(개 또는 고양이)

일본 도착시의 계류 기간이 12시간 이내가 되기 위해서는 (3)항의 채혈일로부터 180일간 이상 경과(채혈일을 0일로 함)하는 한편 2년 이내에 개 또는 고양이가 일본에 도착하도록 해야 함. 채혈일부터 180일간 이상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부족한 입수를 동물검역소의 계류 시설에서 계류됨

주의) 대기기간 동안에 광견병예방 주사의 유효면역기간을 넘을 경우는 반드시 추가 예방 접종 실시(1(2)참조). 또한, 2년을 초과해서 일본에 도착하는 경우, 다시 채혈을 실시해서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를 실시하게 됨

단,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2회째의 대기기간은 불필요(별지의 안내참고)

(5) 사전신고서의 제출

동물을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일본 도착일 40일 전까지 도착예정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신고서” (개는 “광견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 개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 그밖에 “광견병예방법에 근거하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를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제출. 변경 혹은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 계류 검사의 예정에 관해서는 동물검역소가 수입자에게 문의 가능

신고서에는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주소)를 명기

(주요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는 5. 주요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일람 참조)

또한 일본 도착 후에 12시간을 넘는 계류검사가 될 예정이고, 도착예정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의 계류 시설 이외에서 계류를 희망할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 표기. (계류시설 소재지는 3(2)참조)

(6) 신고 수리서

신고서가 접수되면 동물검역소로부터 수입자에 대해 “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수리서”가 교부됨. 수리서는 팩시밀리, 전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자에게 송부됨. 신고자 이외에 송부를 희망할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에 문의할 것

개 등의 수입검사 신청시에 수리서에 첨부되는 수리번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 아울러 개 등의 탑재시에 수리서를 항공회사 등에 제시

(7) 출국전 임상검사

출국전(가능한 한 탑재 전 2일 이내)에 광견병(개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leptospira))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바가 없는지, 수의사에게 임상검사를 받을 것(1(8)참조)

(8)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의 취득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하여 일본 도착시에 동물검역소에 제출. 증명서가 조치한 민간 수의사에 의해 서명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의 뒷보증(공적기관 수의사 싸인과 공인, 소속 기관명, 싸인한 날짜)이 없으면 일본 도착시에 증명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증명서는 일본의 추천양식(Form A, Form C)을 사용할 것을 권장. 증명서의 추천양식은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에서 입수

[증명서의 주된 기재사항] (개 또는 고양이)

- ① 마이크로칩 번호(규격, 번호, 삽입 연월일, 삽입부위)
- ②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예방 주사(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나서 채혈까지의 예방주사와 채혈 후의 추가접종) (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 ③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결과(채혈연월일, 채혈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검사시설명 및 지정번호, 항체수치,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를 첨부)
- ④ 광견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 또는 걸리고 있는 의혹이 없는 것(개는,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병(leptospira)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 않을 것)
- ⑤ 광견병 이외의 예방주사, 기생충구제(주사접종 조치연월일, 주사접종 조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백신의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위의 (2)의 마이크로칩 접종전의 광견병 예방주사가 유효해서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 및 상기 (4)의 광견병 백신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참조(여우,

스컹크(skunk), 미국너구리)

- ① 마이크로칩 번호(규격, 번호, 삽입 연월일, 규격, 삽입부위)
- ②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 않을 것
- ③ 기생충 구제(조치연월일, 조치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제품명)

2) 추천되는 조치 등

일본에 수입되는 개 등에 대해서 이하를 추천함. 특히 일본 도착시에 12시간을 넘는 계류 검사를 받는 개 등은 동물의 건강관리와 계류 시설의 위생관리상, 예방주사나 기생충구제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권함

(1) 예방 주사

생후 91일째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는 일본 도착 30일 이전(백신의 유효면역기간내)에 다음 예방주사를 권함

개: 디스토펜퍼(distemper), 전염성간염(아데노바이러스 2형태 감염증에 가능),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의 3종 혼합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병(leptospira),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추천)

고양이: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 감소증의 3종 혼합. 또한 생후 91일째 미만의 동물은 수의사의 지도 아래 면역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회수로 가능한 한 접종을 하도록 할 것

(2) 기생충 구제

출국전 (탑재전 4일 이내)에 다음 기생충구제를 권함
외부기생충"진드기·"벼룩에게 효과가 있는 약제로 조치하고 수출시의 임상검사에서 진드기나 벼룩이 기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내부기생충"선충류·"촌충류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투여

(3) 수송 케이지

개 등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도망을 막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함

- 동물은 가능한 한 마리씩 개별의 수송 케이지에 넣음
- 수송 케이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준하여 동물이 자유롭게 서고·앉고·잠자고·회전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환기에 충분한 통기구멍이 있을 것으로 함
- 또 통기 구멍이나 철망부에서 동물의 코끝 "눈앞"이나 수족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도망방지 기능을 가진 구조로 함

(4) 도착예정 의 연락

도착시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해서 일본 도착 4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전신고 수리번호, 탑재편 (선)명, 도착예정공항 (항), 도착예정 시각 등을 도착예정공항 (항) 관할 동물검역소에 전화,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로 연락할 것

(5) 수송, 계류에 적합한 건강 상태

다음의 개 등은 수송, 계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권하지 않음. 하는 수 없이 수입할 경우는 사전에 수송 및 계류검사를 견디어낼 수 있는지를 주치 수의사와 상의

- 어린 것, 늙은 것
- 임신중이나 수유중의 것
- 기왕증이 있고, 병약, 투약중(기생충구제 약은 제외함) 혹은 부상을 입고 있는 것 등

3) 수입검역

(1) 도착시 검사

수입자는 개 등이 일본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도착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이 때 수출국 정부기관의 증명서, 지정 검사시설이 발행한 검사통지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제출할 것. 동물검역소의 가축방역관이 서류심사와 개 등의 확인. 개체식별이 이뤄지고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된 개 또는 고양이의 계류기간은 12시간 이내가 되고 통상은 단시간으로 검사가 종료됨. 개 또는 고양이중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와 여우, 미국너구리, 스킨크(skunk)는 동물검역소의 시설에서 계류검사를 받게 됨(180일 이내). 또 예고 없이 채혈검사를 행할 수도 있음

(2) 계류검사

계류검사는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다른 동물로부터 격리되어 이뤄지고, 광견병에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검사.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계류기간과 장소는 동물검역소에서 지시. 특히 희망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에 표시할 것

계류검사는 동물검역소가 행함. 그러나 예를 들면 도착공항(항)에서 계류시설까지의 수송, 계류중의 사육관리, 수의의 왕진, 개 등의 반송·포기·처분과 그 비용은 모두 수입자 부담. 사육관리는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계류실의 넓이나 시설환경, 입퇴장의 규제 등은 각 시설에 따라 다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동물검역소에게 문의

4) 수입자 책무

일본 도착시와 계류기간 동안의 검사를 제외하고 수출국에서의 검사조치, 서류준비, 개 등의 수송, 일본 도착시 수입검사신청절차, 계류검사 동안 개 등의 사육관리,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 검사 종료 후의 절차, 개 등의 인수, 개 등의 반송·처분 등은 수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루어짐. 또, 민간수의사에 의한 진료는 왕진만으로 행해짐. 수입자는 이러한 사항을 양해한 뒤에 개 등을 수입할 것

5) 주요공항(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일람

- 2010년 4월 현재 주된 공항(항)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는 다음과 같음

검역장소 명	수입공항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나리타 지소검역 제1과	나리타국제공항	0476-32-6664	0476-30-3011	na-k1@aq.s.maff.go.jp
나리타 지소검역 제2과		0476-34-2342	0476-34-2338	na-k2@aq.s.maff.go.jp
중부공항 지소	중부국제공항	0569-38-8577	0569-38-8585	meiku@aq.s.maff.go.jp
간사이공항 지소검역과	간사이국제공항	072-455-1956	072-455-1957	ka-ken@aq.s.maff.go.jp
후쿠오카공항 출장소	후쿠오카공항	092-477-0080	092-477-7580	fukuoka@aq.s.maff.go.jp
가고시마공항 출장소	가고시마공항	0995-43-9061	0995-43-9066	kagosima@aq.s.maff.go.jp
나하공항 출장소	나하공항	098-857-4468	098-859-1646	naha@aq.s.maff.go.jp

★ 문의는 긴급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FAX 또는 E-mail을 이용

(별지)

2010년 4월 15일부터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1. 마이크로칩 장착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속 일수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비활화 백신의 다른 유전자조작 백신도 인정

(1) 조건

마이크로칩 장착전의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①)를 접종해 30일 이상 경과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개 또는 고양이

(2) 유의사항

마이크로칩 장착후, 예방주사①의 유효기간내에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②)의 접종 및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항체검사)를 위한 채혈을 동시에 실시(마이크로칩 장착도 동시에 해도 상관없음)하고 항체수치가 0.5IU/ml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혈 일이 대기기간(180일)의 기점으로 되며, 순서서 1(2)의 2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까지의 기간(30일 이상) 단축

또한, 항체수치가 0.5IU/ml 미만인 경우에는 순서 1에 따라 예방주사②접종 후 30일 이상 및 유효면역 기간 내에 다시 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③)접종 후 항체검사 실시

(3) 필요한 증명사항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개 또는 고양이)의 ① 및 ③~⑤외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필요

-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 예방주사 (마이크로칩 장착전의 1회 예방주사, 마이크로칩 장착후의 예방주사 및 채혈 후 추가접종)(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 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2) 이전의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 항체수치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다시 대기나 계류할 필요가 없게 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참고)

(1)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결과의 유효기간 채혈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2)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항체검사①)의 채혈일로부터 2년간을 경과해서 일본에 도착한 경우 항체수치 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다시 항체검사(항체검사②)의 채혈 필요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대기 및 계류가 발생

(3) 유의사항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에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면역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반드시 광견병 예방주사를 추가 접종할 것(1(2) 참조)

(4) 필요한 증명사항

항체검사②의 채혈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개 또는 고양이)의 ①~⑤의 기재사항 필요

한편, 항체검사②의 채혈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내서의 [증명서의 주요 기재사항] (개 또는 고양이)의 ①, ④ 및 ⑤외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 필요

① 비활화 백신 또는 유전자조작 백신에 의한 광견병 예방주사

(항체검사①의 채혈일 전에 2회의 예방주사 및 채혈후의 추가 접종) (주사접종 연월일, 접종자 수의사의 주소·성명, 유효면역기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②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중화 항체수치 검사 결과

(상기 항체검사① 및 ②의 결과) (채혈 연월일, 채혈한 수의사의 주소·성명, 검사 시설명 및 지정번호, 항체수치. 검사시설의 결과통지서를 첨부)

5) 주요 이벤트, 학회 일정 (2009년 실시)

개최일, 기간	분류	이벤트명, 회장	주최
1월22일~24일	학회	일본수의사회학회년차대회 (이와테켄 아이이나)	일본수위사회내 학회사무국
2월14일~15일	애완동물	왕양돔2009 (아이치켄 나고야돔)	주니치신문사 테레비아이치, 나고야돔
2월13일~15일	학회	일본수의사내과학아카데미대회 (동경도 케이오프라자호텔)	일본수의내과학 아카데미
3월26일~29일	애완동물	Japan PET FAIR (카나가와켄 파시후코 요코하마)	일본 PET용품공업회
4월1일~2일	도매	봄 애완동물용품, 식품 종합전시회 (오사카 오사카남향ACT홀)	LOVELY PET상사
4월8일~9일	도매	종합PET전시회 (사이타마 사이타마스파이리나)	자페루
4월4일~5일	애완동물	FCI아시아인터네셔널 DOG SHOW(동경 빅사이트)	재팬케네르club
5월2일~4일	애완동물	PET왕국2009 (오사카 교세라돔)	에코트레팅, 동영
5월2일~6일	애완동물	PET박2009 마쿠아리 (치바켄 마쿠아리멧쎄)	PET박실행위원회
7월18일~20일	애완동물	PET박2009 나고야 (아이치켄 풋트멧쎄 나고야)	PET박실행위원회
8월8일~10일	애완동물	PET박2009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국제센터)	PET박실행위원회
9월19일~20일	애완동물	동물애호후레이이Festival (동경 우에노공원)	환경청, 동경도 다이토구
9월19일~21일	애완동물	PET박2009 오사카 (오사카 인텐쿠스 오사카)	PET박실행위원회
9월25일~27일	학회	일본임상수의학포럼년차대회 (동경도 호텔뉴오쿠니동경)	PET박실행위원회
11월14일~15일	애완동물	Super DOG Carnival (사이타마 세이부돔)	Super DOG Carnival 실행위원회
11월20일~22일	학회	동물임상의학년차대회 (오사카 오사카 국제회의장)	동물임상의학회 투스토리켄 동물임상의학연구소
12월20일	애완동물	FCI동경인테네셔널 DOG SHOW (동경 빅사이트)	재팬 케네르 club
12월19일~20일	애완동물	PET박2009동경 (동경 빅사이트)	PET박실행위원회

〈참고 문헌〉

- 환경청 <http://www.env.go.jp/>
- 농림수산업성 <http://www.maff.go.jp/>
- 주식회사 야생사 <http://www.yaseisha.com/>
- 일본 PET FOOD <http://www.npf.co.jp/>
- 일본 PET정보센터 <http://www.j-pet.com/jpic/>
- 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
- 통계국 정책통괄관/통계연구소 <http://www.stat.go.jp/>
- 2009 PET 관련 시장 마케팅 총괄(주식회사 후지 경제)
- 애완동물 산업 시장개론 2010(주식회사 JPR)
- 애완동물 음식 전망 2009~2010(주식회사 JPR)
- 사단법인 일본 애완동물 협회(JPCA) <http://www.jpca.or.jp/>
- 사단법인 일본 동물 복지 협회(JAWS) <http://www.jaws.or.jp/>
- 동물애호관련협회(JSPCA) <http://www.jspca.or.jp/>
- 공익사단법인 일본동물병원복지협회(JAHA) <http://www.jaha.or.jp/contents/>
- 사단법인 일본 수의사회 <http://nichiju.lin.go.jp/index.php/>
- 일반사단법인전국PET협회 <http://www.pet-kouri.jp/>
- 일반사단법인 전국 PET FOOD, 용품 도매상협회

- 일반사단법인 일본 PET용품공업회 <http://www.jppma.or.jp/>
- 사단법인 재팬 캐네루 클럽(JKC) <http://www.jkc.or.jp/>
- 사단법인 일본 동물 보호관리 협회 (JSHCA)

[관상조류]

1_ 시장규모 및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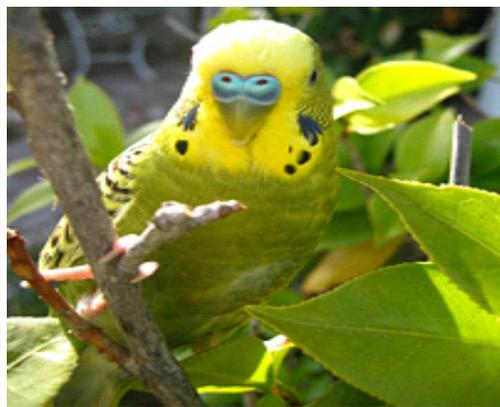
(단위 : 톤, 백만엔)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 (예상)	2010년 (예측)
수량	54,500	53,000	53,000	53,000	53,000
전년도 대비	-	97.2%	100.0%	100.0%	100.0%
금액	5,728	5,535	5,620	5,628	5,600
전년도 대비	-	96.6%	101.5%	100.1%	99.5%

자료원 : 2009 애완동물 관련 시장 마케팅 총괄

가. 시장구성

- 잉꼬, 앵무새, 카나리아, 흰치, 문조 등의 일반 소형조류, 애완용 닭, 메추라기, 비둘기 등의 관상조류의 식품을 대상으로 함



세키세이 잉꼬

- 오스트레일리아 원산지
- 소형조류로 애완용으로 매우 인기 있음
-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색과 무늬가 다양하며 크기가 작은 새들이 대부분이지만 18~23cm의 큰 새들도 있음
- 말을 잘 따라하는 것이 특징으로 인기가 높음
- 초보자도 간단히 키울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코자쿠라잉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잉꼬의 대표. 크기는 15~17cm 정도로 녹색의 몸에 얼굴은 붉은색이 눈에 띈 ○ 얌전한 성격에 말하는 능력은 세키세이 잉꼬보다 부족함 ○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번식이 간단하며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어려움 ○ 장난을 치거나 활발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음
	<p style="text-align: center;">버튼 잉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원산지. 몸길이 14~15cm ○ 사육하기 쉬운 종류. 색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 ○ 공통점은 눈 주변이 하얀 원을 그리고 있어 눈에 띈 ○ 말은 잘하지 못함. 어려서부터 키우기 시작하면 주인 의 손에 익숙해져서 손에 잘 올라타기도 함
	<p style="text-align: center;">오카메 잉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레일리아 원산지 ○ 중형잉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잉꼬 ○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회색의 몸과 옅은 노랑의 머리가 주류 ○ 볼과 귀 부분의 오렌지색이 특징 ○ 성격은 비교적 얌전하나, 흥분하거나 애교를 부릴 때도 있음 ○ 기억한 소리를 따라하는 등 기억력이 뛰어남



카나리에

- 아토리과에 분류되어 있는 소형조류
- 애완조류 흰치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함

나. 관상조류용 식품 시장동향(2007년~2008년)

- 2008년도 관상조류용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도와 큰 변동 없는 5만 3천톤, 전년도 대비 금액은 1.5% 증가한 56.2억 엔으로 나타남
- 워싱턴 조약에 따른 희귀 새 수입금지 규제 때문에 워싱턴조약 체결 이전에 사육되던 조류의 종류를 번식해서 시장에 유통시킴.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조류 수입이 제한되면서 최근에 관상 조류의 유통이 감소함. 또한 조류의 날개털이나 어지럽혀진 먹이 등으로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증상이 지적되면서 조류의 사육, 수요가 감소됨
- 과거 조류를 사육했던 기성세대가 성인이 되어 다시 조류를 사육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앞으로 관상조류 식품의 활성화가 기대됨

- 일반 소형조류 식품시장은 30억 엔 전후, 애완가금용 식품이 20~25억엔 정도로 추정됨

다. 수입현황

(단위 : 톤)

수입국가	년도	조류용	기타제품	수입국가	년도	조류용	기타제품
미국	2006	120	1	중국	2006	1	2,749
	2007	145	0		2007	7	313
네덜란드	2006	4	0	기타	2006	7	119
	2007	0	0		2007	25	2,764

자료원 : PET FOOD협회 [PET FOOD산업실태조사]

2_ 생산동향

가. 시장현황

(단위 : 백만엔)

기업명	2007년(실적)	구성비	2008년(실적)	구성비	2009년(예상)	구성비
일본배합사료	1,052	19.0%	1,252	22.3%	1,300	23.1%
펫즈이스바시	1,200	21.7%	1,00	19.6%	1,100	19.5%
네추럴펫푸드	900	16.3%	910	16.2%	920	16.3%
흑늬펫푸드	290	5.2%	300	5.3%	300	5.3%
아라타	260	4.7%	230	4.1%	230	4.1%
스도	75	1.4%	90	1.6%	90	1.6%
일본펫푸드	38	0.7%	38	0.7%	38	0.7%
기타	1,720	31.1%	1,700	30.2%	1,650	29.3%
합계	5,535	100%	5,620	100%	5,628	100%

자료원 : 2009 애완동물 관련 시장 마케팅 총괄

■ 일본배합사료

- 원료가격이 오르면서 2008년 제품가격이 평균 10% 이상 오르게 됨
- 전년 대비 금액이 20% 이상 증가됨. 대형마트 형 제품판매의 증가로 매상이 늘어나고 관상조류 식품시장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있음

■ 펫즈이시바시

- 관상조류용 식품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9년에는 전문점 브랜드 육성 실적을 지지할 방침

■ 흑노펫푸드

- 전문점 브랜드 [마니아]가 계속해서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음. 중형 [세키세이잉꼬, 분초용 식품]이 잘 팔리고 있음

■ 내추럴펫후즈

- 조류별 식품전개로 순조로운 판매실적을 늘리고 있음. 특히, 매상의 80%가 대량판매점 분야를 나타내고 있음. 대량판매에서는 브랜드 [액셀(600g에 540엔)], 조류 종류별에서는 [세키세이 잉꼬용 식품, 오카이 잉꼬용 식품] 인기. 전문점 브랜드상품은 [프로] 시리즈가 전개되고 있음

자료원 : PET FOOD협회 [PET FOOD산업실태조사]

3_ 유통실태

가. 유통경로, 판매분야 구성 추이

(단위 : 백만엔)

구분	2007년(실적)	구성비	2008년(실적)	구성비	2009년(예상)	구성비
대형마트	2,550	46.1%	2,600	46.3%	2,600	46.2%
애완용품점	2,155	38.9%	2,180	38.8%	2,190	38.9%
슈퍼마켓	600	10.8%	610	10.9%	610	10.8%
편의점	20	0.4%	20	0.4%	20	0.4%
Drugstore	45	0.8%	45	0.8%	45	0.8%
통신판매	117	2.1%	120	2.1%	120	2.1%
기타	48	0.9%	45	0.8%	43	0.8%
합계	5,535	100%	5,620	100%	5,628	100%

자료원 : 2009 애완동물 관련 시장 마케팅 총괄

- 대량판매점 분야가 대부분으로 소형조류, 관상조류용 식품은 분야구성이 대형마트가 4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애완동물용품점이 40%를 차지함
- 대형마트에서는 애완동물 관련용품 매장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장점과 애완동물점에서는 점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나. 제품 트렌드, 신제품 투입동향

- 야생조류 식품. 구관조용 식품 [큐창] 특별히 구관조 사육 수 증가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상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Q짱
1kg (578엔)

■ 일본배합사료에서는 2008년 10월 계육식품의 판매를 시작으로 계란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세키세이 잉꼬의 수요

- 소형조류의 생체사육의 70%가 세키세이 잉꼬가 차지함. 소형조류, 관상조류용 식품회사를 통해 세키세이 잉꼬, 코야오가메이 잉꼬 등 잉꼬계 조류용 식품이 주력. 대량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 세키세이 잉꼬의 분야에서 얼마만큼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음

4_ 수출입동향

- 관상용조류 수출입상황은 관상조류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살아있는 조류의 분류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음. 살아있는 조류 안에 관상용 조류도 포함됨

가. 국가별 수입실적(2009년)

(단위: kg, 천엔)

국가	수량	금액
합계	755	71,357
중국	6	1,087
우즈베키스탄	327	12,717
영국	101	11,195
화란	38	4,911
벨기에	141	12,572
독일	5	1,027
호주	55	9,010
캐나다	48	7,551
트리니다드·토바고	2	345
페루	34	3,136
탄자니아	111	7,806

자료원: 재무성 무역통계(관세번호010631-000)

나. 살아있는 조류 수출통계(2009년)

(단위: kg, 천엔)

국가	수량	금액
합계	43	35,970
한국	8	2,096
중국	10	10,000
홍콩	15	20,243
뉴카레토니아	10	3,631

자료원: 재무성 무역통계(관세번호010639-000)

5_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

가. 조류 수입방법

- 1) 닭, 메추리, 꿩, 타조, 칠면조, (집)오리, 거위 등의 조류. 수입을 위한 검사 14일.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수입할 수 없음
- 2) 도착예정일의 70~40일전까지 동물수입에 관한 서류를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 (휴대품, 우편물로 수입할 경우 제외). 수입하기 전에 동물 검역소에 수입예정에 대한 상담 필요

나. 수입기준

- 1) 국내 신청절차와 워싱턴조약에 충실히 이행한 관점으로 심사 실시. 결과 적당한 수입인 것이 인정될 경우, 타 국가, 지역의 수입에 대해 원칙상 승인함
- 2) 수입하려는 종, 양식, 번식 또는 생태 등에 관한 연구, 그밖의 생물학적 연구 등의 학술연구 사용의 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해당 연구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있어 그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학술연구 목적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3) 하기의 표에 나열된 종으로 구분된 것으로 담당기관이 해당 수입에 관한 종의 존속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조연한 경우
 살아있는 것의 경우, 하기 표에 나와 있는 종의 구분으로 담당기관으로부터 수용, 돌보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싱턴조약에 따른 구분	담당기관
포유류 (족제비과, 강치, 해마, 바다표범, 고래 제외) 조류, 파충류 (바다거북 제외) 양서류, 절족동물, 환태동물	환경청 자연환경국야생생물과
포유류 중 육식 (족제비과, 강치, 해마, 바다표범에 한 함) 파충류 중 바다거북, 자포동물, 연체동물 등	농림수산성 수산청증식추진부 어장자원과 생태계보전실

자료원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무역관리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eti.go.jp/index.html>

6_ 주목 마케팅 정책

- 소형조류, 관상조류용 식품, 각 회사에서는 TV 광고, 잡지 광고 등에는 소극적이고, 이벤트 등 출전을 통해 제품의 인식도를 높이고 있음
- 일본배합사료는 대형마트 등 유통사이트와 협력하여 관계를 형성, 이벤트 등으로 생체를 배부,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소비자에게 사육의 문제점, 의문점을 해결하는 코너를 설치, 담당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이벤트 등의 정보를 메일 매거진 등으로 송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판매 수요에 연결시키고 있음

가. 향후 시장전개, 예측

성장요인	방해요인
국내 육종업자에 대한 기대 식품의 프리미엄화	조류 인플루엔자 생체의 수입제한 생체가격의 상승

■ 생체감소

- 수입조류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으로 워싱턴조약, 앵무새병, 조류 인플루엔자, 동물애호법의 제정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어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체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침
-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생체수입의 감소, 식품업계의 시장 환경회복이 필요
- 수입생체는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단기간에 죽는 등 식품유통량 압박
- 해외 생체수입이 감소, 국내유통 등의 활발화로 건강한 조류의 번식, 육성, 보급함으로써 시장 감소방지

■ 신형 인플루엔자 문제

- 신형 인플루엔자가 문제가 발단된 것은 앞으로 소형조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류 수입환경에 대한 엄격한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참고 문헌〉

- 일본환경청 <http://www.env.go.jp>
- 산계조류연구소 표본데이터 <http://decochan.net/>
- 주식회사 후지경제 2009 PET관련시장 마케팅 총괄
- 일본소형조류, 소형동물협회 <http://www.jbsaa.jp/>

-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index.html>
- 재무성통계 <http://www.customs.go.jp/toukei/info/index.htm>

[관상어]

1_ 시장규모 및 산업동향

- 2008년 관상어 식품시장 규모는 물량 기준 8,625톤, 금액 기준 65억엔으로 전체적으로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고액 상품보다 보통 상품의 수요가 증가. 가격시장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송사리, 거북이, 새우 등의 소형생물 식품의 소규모 수요가 활성화
- 고급 금붕어는 인기상승으로 물량과 금액면에서 모두 증가함

2_ 생산현황

가. 생산량

- 관상어 생산량에 대한 공식적인 일본 전체 통계자료는 없으나, 관상어 양식업자 통계 및 지자체 통계 등의 자료로 추정하면 123,810천마리, 347백만엔으로 추정
 - 추정기준 : (비단잉어) 기후 현 종사자 전국 비율 6%
(금붕어) 아이치 현 생산량 전국 비율 18%
 - 문의처 : 일본수산청, 전일본금리(錦鯉)진흥회, 지자체(니이가타 등) 등
- 생산량은 장소 등의 문제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업계에 의하면 생산량 중 20%는 내수, 80%는 수출용으로 이용된다고 함
- 비단잉어 생산량
 - 연간 생산량 : 3,617천마리 / 342,083천엔(추정)
 - 기후현 관상어(비단잉어) 생산량

(단위 : 천마리, 천엔)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30	26,937	26	20,943	110	80,728	2	12,473	217	20,525

● 금붕어 생산량

- 연간 생산량 : 120,193천마리 / 4,905백만엔(추정)
- 2007년도 전국 생산량(마리수 기준)

(단위 : 천마리)

구분	계	나라현	아이치현	사이타마
생산량 (점유율)	120,193 (100%)	89,110 (74%)	21,133 (18%)	9,950 (8%)

- 아이치현 관상어(금붕어) 생산량

(단위 : 천마리, 백만엔)

2002		2003		2004		2005		200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2,210	999	27,606	1,159	25,941	1,090	26,445	923	21,133	883

나. 관상어 양식업자 현황

- 니이가타현이 일본 최대생산지로 종사자 기준 634개사로 전국의 35% 점유

〈관상어 양식업 경영체수〉

(단위 : 경영체수)

구역	계(실제)	비단잉어	금붕어	기타
전체	1,800	1,315	629	40
니이가타현	634	630	20	2
아이치현	221	21	205	2
기후현	108	104	7	1
사이타마현	97	44	71	6
히로시마현	86	85	1	1
기 타	384	431	325	28

자료원 : 일본 수산청

다. 생산 규모

(단위 : 톤, 백만엔)

적요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측)
열대어	수량	530	520	515	500	490
	전년 대비	-	98.1%	99.0%	97.1%	98.0%
	금액	1,880	1,827	1,819	1,765	1,720
	전년 대비	-	97.2%	99.6%	97.0%	97.5%
금붕어	수량	2,340	2,400	2,440	2,490	2,530
	전년 대비	-	102.6%	101.7%	102.0%	101.6%
	금액	1,950	2,000	2,066	2,111	2,150
	전년 대비	-	102.6%	103.3%	102.2%	101.8%
잉어	수량	4,900	5,180	4,900	4,850	4,800
	전년 대비	-	105.0%	90.0%	98.7%	95.3%
	금액	1,575	1,653	1,488	1,469	1,400
	전년 대비	-	105.0%	90.0%	98.7%	95.3%
기타교재용	수량	710	745	770	800	850
	전년 대비	-	104.9%	103.0%	104.8%	104.8%
	금액	1,025	1,070	1,102	1,155	1,210
	전년 대비	-	104.4%	103.0%	104.8%	104.8%
합계	수량	8,480	8,845	8,625	8,640	8,670
	전년 대비	-	104.3%	97.5%	100.2%	100.3%
	금액	6,430	6,550	6,475	6,500	6,480
	전년 대비	-	101.9%	98.9%	100.4%	99.7%

자료원: 2009 PET 관련시장 마케팅 총괄

3_ 기업의 시장유통 실태

(단위 : 백만엔)

	2007(실적)	구성비	2008(실적)	구성비	2010(예측)	구성비
교린	2,657	40.5%	2,772	42.8%	2,800	43.1%
테토라재팬	2,000	30.5%	2,050	31.7%	2,030	31.2%
요시다사료 일본PET FOOD	583	8.9%	330	5.1%	330	5.1%
이토스이	275	4.2%	275	4.2%	275	4.2%
젯쿠스	166	2.5%	189	2.9%	205	3.2%
이이스타	180	2.7%	185	2.9%	180	2.8%
팻라이	130	2.0%	130	2.0%	130	2.0%
일본배합사료	127	1.9%	129	2.0%	130	2.0%
스마크	120	1.8%	100	1.5%	100	1.5%
마루칸	18	0.3%	18	0.3%	18	0.3%
즈도	5	0.1%	2	0.0%	2	0.0%
기타	299	4.6%	295	4.6%	299	4.6%
합계	6,560	100.0%	6,475	100.0%	6,500	100.0%

자료원 : 2009 PET 관련시장 마케팅 총괄

- [교린]의 독점 : 초심자부터 메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대상을 겨냥하므로 관상어용 식품시장의 43%의 시장을 구축함
최근 각종 생균제를 배합한 프로바이오틱스 타입 제품이 호조. 특히 메니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 관상어용 식품은 교린, 테토라재팬의 상위 2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을 나타냄. 2008년에는 감소경향을 보인 회사가 눈에 띄는 반면 [교린]은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내며 높은 독점태세를 이어감

- [테토라] 금붕어용 호조 : 열대어용 식품의 TOP회사
주력 상품인 [테토라민] 브랜드는 마루치 기능의 아이템으로 최근 열대어 수요가 화제
- 기타 기업동향 : [젯쿠스] 금붕어용 식품 신제품 출시로 사육스타일에 맞춰 3가지 타입이 판매되며 실적이 늘어남
- [이이스타]에서는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식품(란추셀렉션)이 인기

가. 유통경로, 판매분야 구성 추이

(단위 : 백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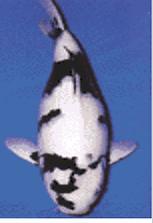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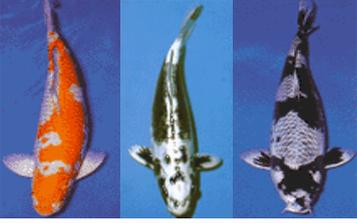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대형마트	3,340	51.0%	3,320	51.3%	3,340	51.4%
애완동물가게	2,480	37.9%	2,440	37.7%	2,425	37.3%
슈퍼마켓	280	4.3%	275	4.2%	275	4.2%
편의점	90	1.4%	85	1.3%	85	1.3%
Drugstore	280	4.3%	270	4.2%	270	4.2%
통신판매	20	4.3%	270	4.2%	270	4.2%
기타	60	0.9%	55	0.8%	55	0.8%
합계	6,550	100.0%	6,475	100.0%	6,500	100.0%

자료원: 2009 PET 관련시장 마케팅 총괄

■ 대형마트 점유율 50%

- 관상어용 식품은 대형마트가 주력 판매경로로 50% 정도를 차지함
그밖에 슈퍼마켓, Drugstore 등을 포함한 대량 판매시장이 전개됨
- 잉어, 열대어, 금붕어 등의 관상어는 개, 고양이에 비해 일반 취미성이 높은 분야로
관상어 전문점 등 애완용품가게가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적 판매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나. 잉어, 금붕어 종류

비단 잉어						
	홍백	다이쇼삼색	쇼와삼액	우츠리모노	카와리고이	
금붕어						
	와킨	류킨	코멧트	핑퐁팔	기신	데미킨

다. 열대어의 종류

	<p>카지나루테토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인기있는 열대어 ○ 네온테토라, 그린테토라, 다이아몬드 테토라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
	<p>구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그라스, 레드그라스, 타키시도, 모자이크, 리얼레드아이 등의 형형색색의 종류가 있음
	<p>디스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코이즈, 피존브란도, 레드로얄 등 아마존 서식, 와일드한 개체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브레코</p> <p>○ 가장 인기있는 인페리아르제브라브레코, 로얄브레코, 오렌지흰카이자, 스칼렛드림, 붓지, 타이카브레코 등 많은 종류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도라스</p> <p>○ 수족의 바닥에 가라앉은 먹이를 주어 먹음 ○ 반다, 주리, 즈테루바이, 아도루퓌이, 메리니 등의 풍부한 종류가 있음</p>

4_ 수출입현황

- '07년 관상어 수출액은 전년비 26.1% 증가한 20,882천불을 나타냈음. 주요 수출국은 홍콩, 미국, 영국으로 전체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07년 관상어 수입량은 전년비 0.8% 감소한 26,954천불을 나타냈음.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네시아로 전체물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관상어 수출현황〉

(단위 : 천불)

	2005(USD)	2006(USD)	2007(USD)
합 계	16,778	16,559	20,882
홍 콩	2,333	2,859	4,396
미 국	2,997	3,286	3,325
영 국	3,191	2,700	2,960
기 타	8,257	7,714	10,201

〈일본의 관상어 수입현황〉

(단위 : 천불)

	2005(USD)	2006(USD)	2007(USD)
합 계	28,750	27,181	26,954
싱가포르	4,341	4,516	4,559
브라질	4,213	4,275	4,362
인도네시아	4,033	4,146	3,999
기 타	16,163	14,244	14,03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GTA)

가. 수출동향

- 일본의 수출량은 2,430백만 엔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임
- 관상어 수출은 니이가타현,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홍콩 등이며, 홍백, 다이쇼 삼색, 쇼와삼색 등의 비단잉어류가 주로 수출됨

나. 수출코드

- 금붕어 : (HS코드)0310.10-100, 金魚
- 비단잉어 등 : (HS코드)0310-10-900, 기타 살아있는 관상어

다. 수출량

- 연도별 수출량

(단위 : 천엔, kg)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금액	1,409,032	1,984,159	1,848,884	1,930,123	2,430,134
	물량	144,336	225,821	255,514	204,002	240,424
금붕어	금액	25,700	9,357	7,551	11,051	12,746
	물량	2,046	562	532	372	461
비단잉어 등	금액	1,383,332	1,974,802	1,841,333	1,919,072	2,417,388
	물량	142,290	225,259	254,982	203,630	239,963

● 국가별 수출량

〈금 봉 어〉

(단위 : 천엔, kg)

2007			2006			2005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전체	461	12,746	전체	372	11,051	전체	532	7,751
타이완	340	10,204	홍콩	214	7,910	싱가폴	322	4,412
홍콩	81	1327	태국	98	1,801	타이완	71	1,037
태국	20	220	타이완	56	1,039	인도네시아	55	428
이스라엘	15	522	한국	4	301	태국	42	643
캐나다	5	472				네덜란드	32	759

〈비단잉어 등〉

(단위 : 천엔, kg)

2007			2006			2005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전체	239,963	2,417,388	전체	203,630	1,919,072	전체	254,982	1,841,333
홍콩	48,487	512,200	미국	49,246	383,422	네덜란드	64,873	241,820
네덜란드	42,180	301,061	영국	30,545	3,113,839	영국	45,856	351,351
미국	39,740	388,475	독일	29,690	289,163	독일	39,415	319,155
독일	37,720	326,225	네덜란드	29,240	211,440	미국	39,393	332,981
말레이시아	10,518	141,769	홍콩	27,784	325,380	홍콩	29,238	259,017
한국	1,278	20,401	한국	2,846	38,611	한국	2,209	1,0761
* EU	115,190	1,086,855	*EU	96,980	906,600	*EU	163,214	1,007,582

라. 관상어(비단잉어) 주요 수출회사 조사결과

회사명	소재지	수출국	품목	경쟁국 관련	전망
고니시양이(鯉)장	히로시마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홍백, 카와리고이 등	없음 (중국, 이스라엘)	해외시장 확대 예상
(유)K.O.C	히로시마	타이, 영국, 독일	홍백, 가와리고이, 우 츠리모노 등	없음	보합전망
에츠코오치야농협 비단잉어시장	니이가타	EU, 미국, 동남아시아	홍백, 다이쇼삼색, 카와 리고이, 우츠리모노 등	없음 중국산 가격이 저렴하 나 일본산은 디자인과 건강면에서 품질이 우수	4년전 규모의 내수 시장 회복 예상
(유)케이한 비단잉어센터	오사카	중국	홍백, 다이쇼삼색, 카 와리고이, 시로우츠 리 등	이스라엘 기술이 항상 하고 있으나 일본이 아직은 확실한 우위	일본시장은 하락세 이나 해외시장, 특 히 중국은 증가

마. 수출 상대국별 특징

- 아시아 : 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일본에 위탁 양식하여 전일본비단잉어평가회(2월 초순 니이가타 개최)에서 수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많음
- 미국, 유럽 : 비단잉어를 애완용으로 사육하여 이름을 붙여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키우는 경향이 높음
- 일본 : 일본산 비단잉어는 “수영하는 다이아몬드”로서 품질가치를 중요시하여 사육하거나, 기술향상에 노력하는 사육가나 품평회 수상을 위하여 취미로 사육하는 애호가 많음

5_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1) 현지시장 판매촉진 및 정부지원 사항

- 현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각 주산지의 현, 즉,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현 및 아이치현 등에서 각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있을 것이라고 농림수산성 재배양식과는 설명하고 있음
- 각 지자체(현) 중 나라현에서는 주산지의 PR을 위한 지원으로 PR용 금붕어의 구입 및 이벤트시의 도구의 무료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지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으로는 특히, 각종 여름축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점에서 금붕어 건져내기는 반드시 등장하고 있으며, 3월3일에는 금붕어의 날로 지정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각 지자체에서는 콘테스트, 기업대상 PR 등을 행하고 있으며, 품평회(관광협회, 금붕어어업협동조합), 물산전 등에 소개 등을 행하고 있음

2) 관세, 검역, 통관 등 수입관련 절차

가) HS코드 및 관세율(수입)

HS코드	품명	실행관세율
0301.10-010	관상용의 물고기(잉어 및 금붕어)	3.5%

나) 수입절차

- 열대어의 수입에 있어서는 절멸(絶滅)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 및 전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양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수입시에는 사전에 어종의 학명,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 수입하려는 열대어가 외래생물법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다) 수입무역관리령 관계

● 워싱턴 조약

- 절멸의 위험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거래의 규제를 행함

- (1) 부속서 1 : 현재 절멸의 위험이 있는 품종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상업목적에 위한 거래 및 학술연구용을 목적으로 한 거래만이 인정된 품종
- (2) 부속서 2 :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절멸의 위기가 생기는 품종으로 상업목적에 위한 거래도 가능한 품종(단, 워싱턴조약 비가맹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례가 없음)
- (3) 부속서 3 : 워싱턴 조약 체결국에 있어서 자국내의 규제 및 거래단속을 위해 타국의 체결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종

- 주의사항

- (1) 부속서에 해당하는 것은 개체, 개체의 일부, 파생물, 박제, 가공품 등 전부를 포함함
- (2) 아로와나(arowana)류는 부속서 1에 해당하나 아시아 아로와나에 한정하여 인도네시아의 개체군만 부속서 2에 해당함. 그러나,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양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입한 후에는 환경성에 등록하고 이 등록표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3) 수입하려는 열대어(관상용)은 학명 및 일본명의 리스트를 첨가할 필요가 있음
- (4) 수입금지해당의 관상어가 문제가 있으나 예를 들면, 아로아나와 메기류와 잉어과 또는 브라질산 송사리 등이 있음

●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관계

-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보호를 위해 국내법으로서는 동법이 있어 워싱턴조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동식물 및 국내에 생식하며, 정부령에 의해 정해진 동식물 등의 포획,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단, 등록 대상종에 대해서는 개체등록 및 허가, 사업자신청 등 별도취급이 있음

-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관계
 - 2005년 6월부터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이 법률에 의해 특정외래생물의 사양(飼養), 수입시에 있어 규제되어 있음. 또, 미판정 외래생물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사전의 주의가 필요함
 - 또, 이 법률에 의해 규제가 부여되지 않은 것, 외래생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 등으로 적절한 거래를 위해 요주의 외래생물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수산자원보호법
 - 일본에서 만연되고 있지 않은 것, 또는 일부 만연되고 있는 수산동물의 치병 중 수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수산동물의 치병(수입방역대상치병)의 일본에 침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치병이 걸릴 위험이 있는 수산동물(살아 있는 것에 한함)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라) 수입통관 관계

-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로 취득한 「수산청 확인서」 「신고확인완료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 보험명세서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심사 및 검사,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마) 한국으로부터 금붕어 등 수입시 주의 사항

- 현재 일본에 수입되는 잉어 및 금붕어에 대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며(물론 한국도 포함), 양국간의 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SVC의 검출로 검역강화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내 검사가 필요한 실정임

3) 수산물 수입제도

- 국내(일본)에서 흔치 않은 수산동물 질병 중 수산업 등의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수산동물 질병(수입방역 대상 질병)의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수산동물(살아있는 생물대상)을 수입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해 농림수산대신의 수입허가가 필요
- 수입허가 신청 선의 접수, 현물검사, 수입허가서 교부 등 수산동물 수입허가 업무는 동물검역소에서 실시

가) 수입허가 신청, 현물검사에 대해

- 수입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필요사항 기입 후 각 지역의 공항,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검역소에 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 제출
- 신청은 수산동물이 도착하기 5일전까지 행할 것. 질병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사전에 관리장소의 확인 필요 (2주전까지 신청)
- 수입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지참, 우송 등 전자정부의 종합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전자신청) 가능
- e-Gov로 전자신청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 처음 이용자는 농림수산성의 홈페이지 참고
-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청시, 서류심사 추가로 수입 수산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현물검사 필요
- 수입허가신청서의 제출은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공항, 항구의 동물 검역소가 담당 (동물 검역소에 문의)

나) 수입허가에 따른 명령

- 1) 수입허가신청이 수입방역대상 질병의 발생국에서 수입된 경우, 수입시 수산동물 현물검사 결과 임상증상, 대량 사망이 인정된 경우 등 신청서에 첨부된

검사증명서로 대상 질병의 병원체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수입조건으로서 농림수산업장관의 수입허가에 따른 명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2) 명령이 발생한 경우, 수산자원보호법시행규칙(1952년 농림성명 제44호)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방법으로 다른 수산동물과 구분된 관리의 가능성이 있음
 관리기간 안에 해당 수입수산동물이 보통과 다른 폐사, 대상 질병에 걸릴 경우,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성대신의 검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검사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그대로 관리조치를 이어감

(정해진 기간은 하기표 참고)

수산동물	관리기간
잉어	21일
금붕어, 기타 붕어 류, 담수어 등	15일
연어과	15일(피시리켓치아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84일)
보리새우과, 기타 새우과	10일(타우라증후군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20일)

정해진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관리해야 할 수산동물을 다른 수산동물과 구별, 보관함
 2. 해당 수산동물이 들어있던 용기 등의 물 배출시 소독해서 배출
 3. 관리기간 중 해당 수산동물이 들어있던 용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처음 용기는 소독관리함
 4. 해당 수산동물의 용기를 폐기할 경우 태우거나 매립해서 처리
 5. 관리기간 중 해당 수산동물의 폐사 원인이 수입대상 질병으로 의심될 경우 농림수산업대신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폐사된 수산 동물에 대해서 태우거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조치, 처분함
- 3) 관리기간 안에 대상 질병의 발증수온에서 관리하고 관리 종료시 관리상황, 수산동물의 상황에 대해 동물검역소에 문서 보고를 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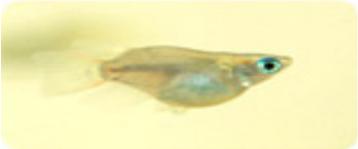
- 4) 관리 명령의 집행기간 중 해당 수산동물이 수입방역대상 질병에 걸리거나, 의심될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

(동물검역소에 연락 후 지시에 따를 것)

6_ 제품 트렌드 / 신제품 투입동향

- 관상어용 식품 중에서도 열대어용 식품이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함
- 금붕어는 여름철 시즌성이 보임. 손쉽게 키울 수 있고,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최근 란추 등 고급금붕어가 붐. 고가의 생체수요와 금붕어용 식품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자리 잡음
- 최근 주목을 모으고 있는 관상어는 송사리
송사리는 종류가 많아 각각의 종류를 모으는 재미, 원예 애호가들의 사용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송사리의 종류)

	<p style="text-align: center;">보통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일반적인 송사리의 하나 ○ 편안한 색과 모양. 초심자도 간편히 키울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다루마 메다카(송사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길이는 짧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여운 송사리 종류. 가장 인기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히카리 메다카</p> <p>○ 등의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헤엄치는 각도에 따라 등이 반짝임</p>
	<p style="text-align: center;">히카리 다루마</p> <p>○ 다루마 메다카와 히카리 메다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매력적인 송사리로 아려짐</p>
	<p style="text-align: center;">투명 메다카</p> <p>○ 짙은 하얀 몸이 특징 ○ 혈관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 앞으로 주목되는 인기 송사리의 하나</p>
	<p style="text-align: center;">판다 메다카</p> <p>○ 눈 주변이 검은색으로 팬더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이 귀여운 송사리</p>
	<p style="text-align: center;">출매 메다카</p> <p>○ 눈과 입의 거리가 짧고 살짝 튀어 나온 눈이 귀여운 송사리. 개성적인 얼굴 모양은 같은 종류의 송사리를 교배시켜도 30~40% 유전됨</p>

■ 주목 마케팅 정책

- 관상어용 식품의 판촉활동으로 각 회사가 전문적으로 광고, 소비자 캠페인, POP, 판촉통로를 사용한 홍보와 사육 상담회 전개
- [교린]은 인기 연예인을 기용해서 2008년 6월~9월에 캠페인 실시. 티셔츠 경품증정 등으로 초심자의 수요가 증가함

■ 향후 시장전개 예측

송사리 인기증가	잉어 붐의 정지
고가 금붕어의 붐	소형 열대어의 수요이동
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	수출산업의 경영환경의 악화

-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퍼듀대학에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 수조에서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보여주면 기분이 안정되고 의식이 바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연구결과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심신의학회, 일본건강심리학회, 일본민족위생학회에서 관상어 사육에 따른 의학적 효과를 발표. 관상어 사육이 정신안정, 기억력, 판단력의 향상, 혈압의 저하, 심박수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을 판명함
- 앞으로는 임상응용을 겨냥한 관상어의 새로운 수요분야가 열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기대됨. 알츠하이머병 등 치료방법이 불확실한 질환의 대책 프로그램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엔화가치의 폭등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직거래 증가
2008년 후반부터 엔화가치가 급격히 폭등하면서 생산에서 수출까지 직거래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의 폭등으로 양식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이 늘어남
- 금붕어, 송사리 생체 인기
사육이 용이하고 생명력이 강한 송사리 사육이 2006년부터 사육자 수 증가. 다양한 종류, 가격 등의 이유로 초심자, 세대 층 관계없이 사육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특히 대형마트의 수요가 증가함
- 금붕어의 왕자라고도 불리우는 란추는 귀여운 모습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핑퐁파루 등 고가의 금붕어의 인기도 늘고 있음. 란추 전용 프리미엄 식품 판매 등 시장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으며 고가의 금붕어 외에도 비교적 사육이 쉬운 금붕어 시장은 송사리와 같이 관상어 시장의 주력상품

〈참고 문헌〉

- 열대어수조 <http://w2332.nsk.ne.jp/h-saitou/nettaigyo.html>
- 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
- 주식회사 후지경제 2009 PET관련시장 마케팅 총괄
- 주식회사 야생사 <http://www.yaseisha.com/>
- 0부터 시작하는 열대어LIFE <http://www.e-nettaigyo.com/>
- 송사리관 <http://www.medakanoyakata.jp/>

[곤충류]

1_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 애완곤충산업 관련 시장구조, 유통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본의 공식발표 자료, 통계자료는 없으나 일부 학회, 연구회를 통한 사육실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애완곤충은 어릴 적 여름방학 시에 즐기는 방법으로서 곤충채집이나 표본작성은 인기가 높았음. 지금도 곤충에 대한 동경을 잃지 않고 취미로 자택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1999년 11월에 식물검역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던 외국산의 투구풍뎅이나 하늘가재의 수입이 해금되었음. 이로 인해 남미산의 [헤라크레스오오카브토무시]라고 하는 곤충이 지금까지 인기가 높고 구입이 곤란했던 곤충을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이것이 발단이 되어 최근에는 열대어 사육 대신하여 곤충사육의 인기가 높아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2_ 생산현황

- 기본적으로는 생체가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의 생산은 전체 유통량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국내산 효고현, 가가와현, 교토부 3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으나 단지 발표자료가 없어 정확한 숫자 파악은 힘든 상황임

- 수입규제가 있었을 무렵은 독자적인 매입루트와 희소가치 이유의 고가에 의한 판매로 경합도 적고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소매업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익의 폭이 내리고 있고, 기존 곤충 생체의 소매는 어려워지고 있음. 그러나 시장전체는 확대경향에 있는 것으로 아직 개척의 여지가 있는 분야이기도 함
- 벌레의 생체판매는 아이나 어른 수집가를 중심으로 다른 애완동물 비즈니스에 비하면 소규모이지만 뿌리 깊은 시장이기도 함. 곤충 수입의 규제 완화에 의해 시장은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 홈 센터점 등이 곤충 판매 코너를 확장하는 추세임

3_ 유통실태

- 곤충의 경우 곤충 전문도매상이 있어 한군데서 생체는 물론 관련 용품도 동시에 구매할 수 있음. 꽤 이전에는 생체육선(인터넷상거래)도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1999년 11월에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유해동물로 되어있던 외국산 곤충(투구풍뎅이나 하는가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임
- 곤충 도매상은 관상어나 조류의 도매상 수에 비하면 훨씬 적음. 특히 일본이 1980년대 이후, 하늘 가재 등의 대형 갑충류의 사육 붐이 일어났고 1999년 11월 규제 완화와 함께 연간 수십만 두의 개체가 일본에 반입되어 애완동물 솥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로 재래종(국내산)의 위기적 상황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함. 수입, 유통 개체수의 증가에 따라 대형화됨으로써 경쟁력이 강한 외국산 갑충류가 야생화 했을 경우, 일본재래의 투구벌레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원산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곤충이 부정하게 채집, 수입되어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애완동물 솥에서 태연하게 판매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함. 일본 곤충학회, 일본초시학회, 일본 투구벌레 학회, 일본 곤충분류학회는 이런 외래종이 일본 고유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위협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① 종류

- 살아있는 곤충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 목적은 번식사육
- 혈통주의, 특정지역의 브랜드 주의의 매니아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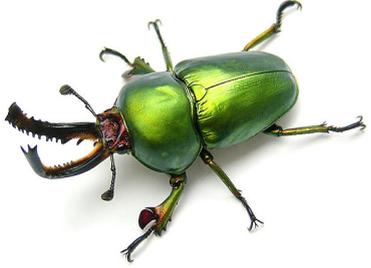
	이름	데키피엔스노코기리
	학명	Prosopocoilus decipiens
	원산국	인도네시아·자와섬 MAX사이즈 : ♂70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4,000~10,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4~9월

	이름	모세리오우곤오니
	학명	Allotopus moellenkampi moseri
	원산국	말레이시아 MAX사이즈 : ♂80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5,000~20,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5~10월

	이름	디디엘 사슴
	학명	Rhaetulus didierl
	원산국	말레이시아 MAX사이즈 : ♂88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5,000~15,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4~9 월

	이름	콘후키우스노코기리
	학명	<i>Protoparce confucius</i>
	원산국	베트남 MAX사이즈 : ♂108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7,000~10,000 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6~9월
	이름	후키누키코크와
	학명	<i>Dorcus fukinukii</i>
	원산국	인도 MAX사이즈 : ♂57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5,000~7,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베트남크루비덴스 ssp.
	학명	<i>Dorcus curvidens</i> ssp.
	원산국	베트남 MAX사이즈 : ♂77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15,000~20,000 엔
	유충평균가격	1,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5~9 월
	이름	히페리온히라타
	학명	<i>Dorcus hyperion</i>
	원산국	인도 MAX사이즈 : ♂7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6,000엔~13,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스트리아타트야
	학명	<i>Odontlabis striata</i>
	원산국	인도네시아 MAX사이즈 : ♂52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2,000~3,000엔
	유충평균가격	6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라테라리스노코기리
	학명	<i>Prosopocoilus lateralis lateralis</i>
	원산국	필리핀 MAX사이즈 : ♂58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8,000~10,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하스 타트 노코기리
	학명	<i>Prosopocoilus hasterti hasterti</i>
	원산국	ソロモン諸島 AX사이즈 : ♂6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60,000~80,000엔
	유충평균가격	15,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아스타코이테스노코기리 (카스타네우스)
	학명	<i>Prosopocoilus astacoides castaneus</i>
	원산국	인도 MAX사이즈 : ♂6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3,000~5,000円
	유충평균가격	6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9월

	이름	사바게노코기리
	학명	<i>Prosopocoilus savagei</i>
	원산국	카메룬 MAX사이즈 : ♂6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3,000~5,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10~3월	
	이름	스펜스노코기리
	학명	<i>Prosopocoilus spencei mandibularis</i>
	원산국	타이 MAX사이즈 : ♂52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9,000~13,000엔
	유충평균가격	1,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통년	
	이름	파브리노코기리 (타카쿠와이)
	학명	<i>Prosopocoilus fabrici takakuwai</i>
	원산국	인도네시아 MAX사이즈 : ♂8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9,000~13,000엔
	유충평균가격	1,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통년	
	이름	파프아킨이로크와가타
	학명	<i>Lamprima adolphinae</i>
	원산국	인도네시아 MAX사이즈 : ♂55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2,000~3,000엔
	유충평균가격	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통년	

	이름	니지이로크와가타
	학명	Phalacrognathus muelleri
	원산국	오스트레일리아 MAX사이즈 : ♂70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2,000~4,000엔
	유충평균가격	6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통년
	이름	카네기에이텔노코기리
	학명	Prosopocoilus kannegieteri
	원산국	인도네시아MAX사이즈 : ♂43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2,000~3,000엔
	유충평균가격	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4~9월
	이름	쿠프레오니텐스호소야카
	학명	Cyclommatus cupreonitens
	원산국	인도네시아MAX사이즈 : ♂66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1,500~2,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첫령 1마리)
	입하기간	3~5월
	이름	리노케로스후타마타
	학명	Hexarthrus rhinoceros chaudiroi
	원산국	인도네시아·스마트라島 MAX사이즈 : ♂108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7,000~15,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6월

	이름	푼크티웬니스네브트
	학명	<i>Aegus punctipennis</i>
	원산국	인도네시아 MAX 사이즈 : ♂ 50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7,000~10,000엔
	유충평균가격	1,5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3~5월
	이름	멘가타크와가타
	학명	<i>Homoderus mellyi</i>
	원산국	카메룬 MAX 사이즈 : ♂ 58mm
	입수난이도	★★☆☆☆
	사육난이도	★★☆☆☆
	성충평균가격	3,000~4,000엔
	유충평균가격	1,000엔 (첫령 1마리)
	입하기간	11~6월

4_ 수출입실적 및 동향

1) 곤충수입 수입현황('09)

(단위 : kg, 1,000엔)

국가	물 량	금 액
합계	60,586,086	306,795
중국	44,197,500	64,112
대만	10,000	306
말레시아	1,005	256
인도네시아	183,431	20,521
이스라엘	157,050	22,817
네덜란드	14,848,400	166,533
벨기에	189,490	23,624
프랑스	610	224
독일	86,400	1,511
이탈리아	910,000	5,546
카멜룬	1,880	1,097
탄자니아	320	248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자료(HS코드 010690020)

2) 동물 그외 품목 수출현황('09)

(단위 : kg, 1,000엔)

품 명	물 량	금 액
합 계	1,990	1,212
독일	1,732	862
미국	258	350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자료(HS코드 010690000)

- 상기 수출통계의 경우는 관상용 곤충으로는 별도 자료가 없으며 동물 중에서도 그 외 품목으로만 발표되고 있음

① 수입의 문제점

수입국가에서는 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곤충들이 수입된 해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곤충들도 수입이 허가됨

② 곤충의 수입

- 1) 사슴벌레 종류의 곤충에 대해서는 식물방역소에서 확인검사를 통해 새로운 [외래생물법상의 규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음
- 2) 수입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종류명증명서를 첨부
- 3) 장수풍뎅이 등의 곤충 수입시 발행했던 [수출국 공적 기관발행 증명서], [곤충 종류 등 수입검사 신청서]는 필요 없음
- 4) 사슴벌레 종류를 포함한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 2월부터 [외래생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5_ 산업육성 관련 법령 및 정책

■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의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특정외래생물의 사육, 재배, 보관 또는 운반(이하 「사육」 등 이라고 한다.) 수입 그 외 취급을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등에 의한 특정외래생물의 방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특정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생물의 다양성 확보,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및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 1 이 법률에 대해 「특정외래생물」이란 해외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것으로 그 본래의 생식지 또는 생육지의 밖에 간직하게 되는 생물(이하 「외래생물」이라고 한다.)로서 국내에 그 본래의 생식지 또는 생육지를 가지는 생물(이하 「재래생물」이라고 한다)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개체(알, 종자 그외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그 기관(사육 등과 관련되는 규제 등의 이 법률에 근거하는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살아 있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대해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란 생태계,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 또는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피해를 말한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해당되어 그 법안을 제정할 때는 생물의 성질에 관계되어 전문의 학식경험을 가지는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

제3조 1 주무대신은 중앙환경심의회회의 의견을 들어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해, 이것에 대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기본방침(이하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은 다음으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기본구상
- ② 특정외래생물의 선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③ 특정외래생물 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④ 특정외래생물의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⑤ 전 각호로 열거하는 것 외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중요사항

3 주무대신은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에 대해 제1항의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2장 특정외래생물 취급에 관한 규제

(사육 등의 금지)

제4조 특정외래생물은 사육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와 관련되는 사육 등을 하는 경우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방제와 관련되는 포획 등 그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육 등의 허가)

제5조 학술연구의 목적 그 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특정외래 생물의 사육 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무대신에게 허가의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신청과 관련되는 사육 등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1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육 등의 목적이 제1항에 규정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2) 사육 등을 하는 자가 해당 특정외래생물의 성질에 따라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육 등의 시설(이하 「특정사육 등 시설」이라고 한다)을 가지지 않는 것, 그외 사유에 의해 사육 등과 관련되는 특정외래생물을 적절히 취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 대해서 그 허가조건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와 관련되는 사육 등을 하려면 해당 특정외래생물과 관련되는 특정사육 등 시설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해당 특정외래생물에 대해 그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 그 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육 등 허가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조 ①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첨부된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특정외래생물과 관련되는 사육 등의 방법의 개선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맡아야 할 일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가 생겨 또는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입의 금지)

제7조 특정외래생물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단,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와 관련되는 특정외래생물의 수입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도 등의 금지)

제8조 특정외래생물은 양도하거나 또는 인도 혹은 인수(이하 「양도 등」 이라고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사육 등을 하거나 사람의 사이에 있어 그 사육 등과 관련되는 특정외래생물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그 외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버리는 것, 심는 것 또는 뿌리는 것의 금지)

제9조 사육 등 수입 또는 양도 등과 관련되는 특정외래생물은 해당 특정 외래생물과 관련되는 특정사육 등 시설의 밖에서 버리거나 심거나 또는 뿌려서는 안 된다.

(보고 징수 및 입회검사)

제10조 ①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대해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외래생물 취급의 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해 또는 그 직원에게 특정외래 생물의 사육 등과 관련되는 시설에 들어가 특정외래생물,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켜,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죠후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3장 특정 외래 생물의 방제

(주무대신 등에 의한 방제)

제11조 ①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대신 및 정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대신 등」 이라고 한다)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해 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주무대신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하려면 관계 도도부현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해 이것을 공시해야 한다.
 - 한방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외래생물의 종류
 - 방제를 실시하는 구역 및 기간
 - 특정외래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도살처분(이하 「포획 등」 이라고 한다.)
 - 그 외 방제의 내용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2조 주무대신 등이 실시하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와 관련되는 특정외래생물의 포획 등에 대해서는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8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조 ① 주무대신 등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에 필요한 한도에 대하여 그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 혹은 수면에 들어가 특정외래생물의 포획 등을 시키거나 또는 해당 특정외래생물의 포획 등의 지장이 되는 입목대나무를 벌채시킬 수 있다.
- ② 주무대신 등은 그 직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 혹은 수면의 점유자 또는 입목대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③제1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손실의 보상)

제14조 1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통상 손실을 보상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무대신 등에 이것을 청구해야 한다.

3 주무대신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보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소 제기)

제15조 1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해야 할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호소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원인자 부담)

제16조 국가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의 실시가 필요했을 경우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방제의 실시가 필요한 한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금의 징수 방법)

제17조 주무대신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비용을 부담 시키려고 할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그 부담 시키려고 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 대해 「부담금」 이라고 한다)의 금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고 그 납부를 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주무대신 등은 전항의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독촉장으로 기한을 지정해 독촉해야 한다.

3. 주무대신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했을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부담금의 액수에 연 14.5퍼센트를 넘지않는 비율을 곱하고, 제1항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부담금의 완납의 날 또는 그 부담금과 관련되는 재산압류의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의해 계산한 액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주무대신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동항의 독촉장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그 납부해야 할 부담금 및 그 부담금과 관련되는 전항의 연체금(이하 이 조에 대해 「연체금」 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그 부담금 및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부담금 및 연체금의 선취 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뒤잇는 것으로 한다.

5 연체금은 부담금에 앞서는 것으로 한다.

(주무대신 등 이외의 사람에 의한 방제)

제18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실시하는 특정외래생물의 방제이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사항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주무 성령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 주무대신의 그 취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는 그 실시하는 특정외래생물의 방제에 대해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적정 확실히 실시할 수 있으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사항에 적합하고 있는 취지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확인을 했을 때 또는 전항의 인정을 했을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한것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것들을 취소했을 때도 같다.

4 제12조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방제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제2항의 인정을 받은 방제에 대해 제13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방제에 관한 사무를 소장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9조 주무대신은 전조 제2항의 인정을 받고 방제를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 그 방제의 실시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18조 제1항의 확인 또는 동조 제2항의 인정을 받고 방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방제를 중지했을 때 또는 그 방제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입각해서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 통지해야 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는 그 통지와 관련되는 제18조 제1항의

확인 또는 동조 제2항의 인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무대신은 제18조 제2항의 인정을 받은 방제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사항에 입각해서 행해지지 않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방제를 실시하는 사람이 그 방제를 적정 한편 확실히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혹은 전조에 규정하는 보고를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미판정 외래생물

(수입의 신고)

제21조 미판정 외래생물(재래생물과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혐의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살아있는 것에 한정)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미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그 미판정 외래생물의 종류 그 외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정)

제22조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하는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신고와 관련되는 미판정 외래생물에 대해 재래생물과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그 결과를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입의 제한)

제23조 미판정 외래생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그 미판정 외래생물에 대해 재래생물과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전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그 미판정 외래생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있어서의 수출자와 관련되는 미판정 외래생물)

제24조 미판정 외래생물을 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미리 주무 성령으로 정함에 따라

그 미판정 외래생물의 종류 그 외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대신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22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장 잡칙

(수입을 위한 증명서의 첨부 등)

제25조 특정외래생물 또는 미판정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확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생물로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생물(살아있는 것에 한정)은 해당 생물의 종류를 증명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 그 외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생물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

제26조 주무대신은 그 직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 제6조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의 권한의 일부를 실시하는 직원(다음 항에 대해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단속관」이라고 한다)은 그 권한을 실시할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전 2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단속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과학적 지견의 충실을 위한 조치)

제27조 국가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 및 그 방지에 관한 과학적 지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 및 연구의 추진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이해의 증진)

제28조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특정외래생물의 방제 등에 관해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무대신 등)

제29조 ① 이 법률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환경대신으로 한다. 단,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피해방지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으로 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서의 주무 성령은,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29조의2 이 법률에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방지분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과 조치)

제30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대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 대해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를 정할 수 있다.

(주무 성령에의 위임)

제31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수속, 그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주무 성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판매 또는 반포를 하는 목적으로 특정외래 생물의 사육 등을 한 자

2 거짓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특정외래생물의 판매 또는 반포를 한 자

제33조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①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 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②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첨부된 조건에 위반하여 특정외래생물의 사육 등을 한 자

③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4조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를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혹은 허위 진술을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제32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32조 1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33조 5천만엔 이하의 벌금형

3 제34조 또는 제35조 각 본조의 벌금형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해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기본방침에 대해 동항의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본방침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대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으로 간주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3조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년 4월27일 법률 제33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4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제정 하고 또는 개폐(改廢)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으로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별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를 정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곤충인기투표 <http://nautilus-world.com/cgi-bin/voting.cgi>
- All About http://allabout.co.jp/pet/aquarium/subject/msub_species.htm
- 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
- 일본 환경청 <http://www.env.go.jp/>
- 국내인터넷 비즈니스 <http://www.jnews.com/domestic/2003/d0317.html>
<http://eritokyo.jp/independent/ikeda-col1020.html>
- 애완동물산업실태 (이케타고미찌상) <http://www.e-colors.jp/>
- 재무성 <http://www.mof.go.jp/>
- 전국관 애완산업동태조사 January 2008
- <http://www.env.go.jp/kr/nature/07.pdf>

